

제25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심사대상 조례안 공고

지방자치법 제66조의2에 따라 제25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심사대상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2일

순 천 시 의 회 의 장



1. 조례안 목록

- 순천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순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순천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초등학생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순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창업보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소형경전철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 기간 : 2021. 7. 2. ~ 7. 7.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 7. 7일까지 순천시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또는 이메일

1) 주 소 : 전남 순천시 장명로 30 (장천동, 순천시의회) / 우 : 57956

2) 이메일 : myungjee1103@korea.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의회사무국(전화 : 061-749-495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입법예고 조례안 각 1부. 끝.

순천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영란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제3485호
----------	--------

발의연월일 : 2021. 7. 1.

이영란 · 허유인 · 김미연

발의자 : 이명옥 · 오행숙 · 정홍준
의원

1. 제정이유

- 순천시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 공공기관 유치를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공공기관 유치 활동과 이전공공기관에 대한 입지, 이전 지원 등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적용 대상을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부터 제11조까지)
- 공공기관 유치활동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
- 공공기관의 이전 및 이주직원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부터 제16조)
- 공공기관의 이전 여론수렴 및 연구조사를 규정함(안 제18조)
- 비밀엄수의 의무를 규정함(안 제19조)

3. 제정조례안 : 별첨

- ## 4. 관련법령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지방공기업법」 제2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 제19조

- ## 5. 예산상황
- 예산의 범위에서 수립·시행하는 지원계획에 따른 재정 수반

순천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의 발전을 위하여 공공기관 등 유치의 효율적 추진과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공공기관 등”이란 국가기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사,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을 말한다.

제3조(위원회의 설치) ① 공공기관 등의 유치 활동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순천시 공공기관 유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명칭은 유치하려는 공공기관명을 넣어 사용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공기관 등의 유치(이하 “유치”라 한다) 및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2. 유치를 위한 홍보 및 방문 활동
3. 유치 관련 업무 추진에 관한 중요사항의 협의·조정
4. 그 밖에 유치에 필요한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2명의 공동위원장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공동위원장을 두게 되는 경우에는 1명은 시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해당 유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
2. 순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3명
3. 학계, 언론계, 기업체, 사회단체 등 각 분야에서 유치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해촉(解囑)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③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4.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 시 각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④ 분과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경미 하거나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분과위원회의 의결로써 위원회의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

10조(간사)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공기관 유치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유치 활동 지원) 시장은 유치 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유치 공공기관의 애로사항 발굴 지원을 위한 전담 공무원의 지정
2. 각종 행정절차 등의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행정적 지원

3. 그 밖에 유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제13조(이전 지원) ① 시장은 관내로 이전하는 공공기관등(이하 “이전공공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시설용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기 위한 분양가 차액
2. 이전공공기관의 사옥 토지에 대한 무상제공
3. 사무소 신축비 및 임대료
4. 지역 인력 채용 시 인건비

② 시장은 이전공공기관이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이전공공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토지를 매입하여 임대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이전공공기관이 납부하는 지방세를 감면 할 수 있다.

제14조(대부료 감면) 시장은 이전공공기관에 대하여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2조에 따라 공유재산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5조(이주 직원에 대한 지원) 시장은 관내 전입한 이전공공기관의 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이주정착 장려금 및 이주 직원 자녀 장학금
2. 주택자금 대출이자
3. 이사비용 지원
4. 1인 가정 월 임대료 지원
5. 지역 교육비 카드 제공
6. 지역 문화활동비 카드 제공

제16조(기본 시설에 대한 지원) 시장은 유치 촉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공공기관 등의 예정 부지 주변 도로 등 기반 시설 조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조(협력사업의 추진) 시장은 시정발전에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과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8조(여론 수렴 및 조사연구) ① 시장은 유치에 필요한 때에는 공청회,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유치에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기관·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9조(비밀엄수의 의무) 위원회의 위원은 직무 수행 중에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포상) 시장은 공공기관 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기업, 단체 등을 포상할 수 있다.

제2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약칭: 공공기관운영법)

제4조(공공기관) ①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
2. 정부지원액(법령에 따라 직접 정부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의 경우에는 그 위탁업무나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
3.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4. 정부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단독으로 또는 두 개 이상의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설립하고, 정부 또는 설립 기관이 출연한 기관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

1. 구성원 상호 간의 상호부조·복리증진·권익향상 또는 영업질서 유지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2.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
3. 「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와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

교육방송공사

- ③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정부지원액과 총수입액의 산정 기준·방법 및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실상 지배력 확보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공기업법」

[시행 2021. 1. 21.] [법률 제17522호, 2020. 10. 20., 일부개정]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그에 부대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제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업(이하 “지방직영기업”이라 한다)과 제3장 및 제4장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사업에 대하여 각각 적용한다.

1. 수도사업(마을상수도사업은 제외한다)
 2. 공업용수도사업
 3. 궤도사업(도시철도사업을 포함한다)
 4. 자동차운송사업
 5. 지방도로사업(유료도로사업만 해당한다)
 6. 하수도사업
 7. 주택사업
 8. 토지개발사업
 9. 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복리시설을 포함한다)·토지 또는 공용·공공용건축물의 관리 등의 수탁
- ②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경상경비의 50퍼센트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사업을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
1. 민간인의 경영 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서 주민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나 지역개발의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

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
 4.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여행업 및 카지노업은 제외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2조를 준용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적용 대상 등) ①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 기관(이하 “출자·출연 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출자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산정 기준에 따라 계산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②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지방공기업법」 제2조, 같은 법 제3장 및 제4장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지방공기업(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

가. 지방직영기업

나. 지방공사

다. 지방공단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3.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을 회원으로 하면서 지방자치단체 간 발전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복리증진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기관

4. 「민법」에 따른 사단법인

③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100분의 50 미만인 출자기관에 대해서는 제9조, 제10조의3,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5조, 제15조의2, 제15조의3,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17조의3, 제18조제3항·제4항, 제19조 및 제22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지방자치단체가 최대지분을 보유하고 지분의 분산도(分散度)로 보아 주주권 등의 행사에 따른 기관 지배가 가능한 경우
2.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조례 또는 정관에 따라 해당 기관의 기관장 또는 이사회 구성원의 과반수의 임명(승인·제청 등을 포함한다)에 관여하는 경우
3.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조례 또는 정관에 따라 해당 기관의 예산 또는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경우
- ④ 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100분의 25 이상인 출자기관에 대해서는 제9조, 제12조,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을 적용한다.
- ⑤ 출자·출연 기관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약칭: 국가균형발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공공기관"이란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18조(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 ① 정부는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이전대상공공기관"이라 한다)을 단계적으로 지방으로 이전(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의 이전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기 위한 공공기관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이하 "혁신도시시책"이라 한다)을 추진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하는 공공기관 및 그 종사자에 대하여 재정적·행정적 지원 및 생활환경의 개선 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9조(기업 및 대학의 지방이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도권 중 시·군·구별로 인구과밀·산업입지·산업집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있는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재정적·행정적 사항 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도권(성장촉진지역과 특수상황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대학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재정적·행정적 사항 등에 관

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및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참고

전국 관련조례

○ 관련 조례 현황 : 8 지자체

- 1 도 : 충청북도
- 7 시군 : 공주, 상주, 아산, 청양, 충주, 파주, 홍성

순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영란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제3485호
----------	--------

발의연월일 : 2021. 7. 1.

이영란 · 허유인 · 김미연

발의자 : 이명옥 · 오행숙 · 정홍준
의원

1. 개정이유

-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 발의시 순천시의회의원 및 위원회의 경우에도 비용추계서 작성 의무 규정

2. 주요내용

가. 순천시의회의원 및 위원회의 비용추계서 작성 의무 규정(제3조 제1항)

나. 비용추계서 작성의 예외사항 규정(제3조 제3항)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원 미만인 경우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비용추계의 대상이 국가안전보장·군사기밀에 관한 사항인 경우

다. 비용추계서 미작성 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제출 규정(제3조 제4항)

3. 개정조례안 : 별첨

4.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5. 예산상황 : 해당없음

순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은 발의하는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및 재원조달방안에 대하여”를 “, 순천시의회 의원 및 위원회가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안·발의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비용추계의 대상이 국가안전보장·군사기밀에 관한 사항인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의 안 명 :

2. 재정수반요인

3. 미첨부 근거 규정

(「순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제○호에 해당하는지 표시)

4. 미첨부 사유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못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거나 관련 자료 제시)

5. 작성자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비용추계서 작성대상) ① 순 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발의하는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및 재원조 달방안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u><신 설></u>	제3조(비용추계서 작성대상) ① --- ----(이하 “시장”이라 한다), 순 천시의회 의원 및 위원회가 예산 상 또는 기금상의 비용을 수반하 는 의안을 제안·발의하는 경우 - -----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 서 총 1억 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 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비용추계의 대상이 국가안전보 장·군사기밀에 관한 사항인 경 우 ② (현행 제3항과 같음) ④ 제3항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 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생 략) <u><신 설></u>	

지방자치법

제66조의3(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에 대한 추계 및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자료의 작성 및 제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순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시행 2019. 7. 31.] [전라남도순천시조례 제2025호, 2019. 7. 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6조의3에 따라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자료작성 및 제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비용추계서”란 제출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2. “세출”이란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지출을 말한다.
3. “세입”이란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제3조(비용추계서 작성대상)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발의하는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및 재원조달방안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도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4조(비용추계서 작성방법) ① 비용추계서에는 비용발생 요인, 비용 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 조달 방안,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되, 계량적 표시가 곤란한 때에는 비용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대신하여 기술할 수 있다.

③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며,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때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하여 추계한다.

④ 비용추계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하되, 필요한 때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세입이 장래에 발생하는 경우에는 세입에 대한 비용추계를 세입 발생예정일로부터 5년간 추가로 작성한다.

⑤ 비용추계는 연도별로 구분 작성하되, 연도별 규모 산정이 부적합한 때에는 달리 표시할 수 있다.

⑥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행정안전부의 해당연도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적용하고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없는 때에는 발의 당시의 가격으로 한다.

제5조(재원조달방안의 작성) 시장은 재원조달방안을 작성할 때에는 해당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지방채발행, 기금, 특별회계, 차입금, 예비비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6조(작성부서 및 제출시기) ①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소관 부서에서 작성하되, 필요한 때는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② 비용추계서 작성 부서는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기 전에(주민 조례안의 경우에는 의회에 부의하기 전) 예산담당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을 의회에 부의할 때 소관부서는 제3조에 따른 비용추계서 및 의견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광주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원·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이하 “의원 등”이라 한다)·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의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이 곤란한 경우
-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 작성) 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추계내용을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이 곤란한 경우
- ③ 제2항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의 대상) ① 시장과 시의회 의원 또는 위원회가 발의하는 의안의 규정에 따라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추계 대상은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과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하여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제4조(비용추계 제외대상) ①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제외대상인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순천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병배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제3486호
----------	--------

발의연월일 : 2021. 7. 1.

발 의 자 : 최병배 의원

1. 개정이유

- 공익신고의 신고 방법과 공익신고 조사 및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규정을 신설

2. 주요내용

- 공익신고 접수 조항 신설 (안 제6조)
- 공익신고 조사 및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조항 신설 (안 제8조)

3. 개정조례안 : 별첨

4. 관련법령 : 「공익신고자 보호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5. 예산상황 : 예산의 범위에서 수립·시행하는 계획에 따른 재정 수반

순천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안 제16조를 제5조로 하고 제5조를 제7조로, 제6조를 제9조로 하며, 제7조와 제9조의 “시장”을 “공익신고책임관”으로 한다.

안 제7조부터 제15조까지를 각각 제10조부터 제18조까지로 하고,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를 각각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로 한다.

안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공익신고의 접수) ①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자가 법 제8조에 따른 별지 제1호서식 신고서를 방문, 우편, 인터넷 및 팩시밀리 등의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 접수하여야 한다.

② 공익신고책임관은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공익신고가 아닌 일반 민원으로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다.

안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공익신고 조사·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① 공익신고자가 제7조의 조사 및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방문·우편·인터넷·팩시밀리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이의신청 할 수 있다.

② 공익신고책임관은 이의신청을 검토한 후 그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제16조(공익신고책임관 지정 등)</u> ① 시장은 공익신고자보호업무 담당 과장을 공익신고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②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자 보호 제도의 교육, 공익신고의 상담·접수·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도록 한다. <u><신 설></u>	<u>제5조(공익신고책임관 지정 등)</u> ①~② (현행 제16조와 같음)
<u>제5조(공익신고의 처리)</u> ① <u>시장</u>은 공익신고를 접수하였을 때나 국민권익위원회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공익신고를 이송 받았을 때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공익신고의 조사기간은 60일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조사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른	<u>제6조(공익신고의 접수)</u> ①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자가 법 제8조에 따른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를 방문, 우편, 인터넷 및 팩시밀리 등의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 접수하여야 한다. ② 공익신고책임관은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공익신고가 아닌 일반 민원으로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다. <u>제7조(공익신고의 처리)</u> ① <u>공익신고책임관</u>은 공익신고를 접수하였을 때나 국민권익위원회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공익신고를 이송 받았을 때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법령에서 처리기간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③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를 끝냈을 때에는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공익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시장은 관할에 속하지 않은 공익신고를 접수하였거나, 이송 받은 때에는 바로 해당 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 ⑤ 시장은 공익침해행위의 확산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도 개선 등 예방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 설>

제6조(공익신고자등의 보호)

- ① 시장은 공익신고자등과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 노출되거나 공익신고등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공익신고의 접수·처리 과정에서 다른 조사기관 등이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

- ③ (현행과 같음)

- ④ 공익신고책임관은 관할에 속하지 않은 공익신고를 접수하였거나, 이송 받은 때에는 바로 해당 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 ⑤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침해행위의 확산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도 개선 등 예방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 (공익신고 조사·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① 공익신고자가 제7조의 조사 및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방문·우편·인터넷·팩시밀리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이의신청 할 수 있다.

② 공익신고책임관은 이의신청을 검토한 후 그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공익신고자등의 보호)

- ①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자등과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 노출되거나 공익신고등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②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의 접수·처리 과정에서 다른 조사기관 등이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이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시장은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공익신고자등에게 국민권익위원회의 구제절차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④ 공익신고의 접수와 처리에 관련된 공무원이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을 누설한 경우에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제15조 (생략)

제17조~제20조 (생략)

없이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공익신고자등에게 국민권익위원회의 구제절차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④ (생략)

제10조~제18조

(현행 제7조~제15조와 같음)

제19조~제22조

(현행 제17조~제20조와 같음)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2019. 12. 25.] [법률 제16057호, 2018. 12. 24.,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

나.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2. “공익신고”란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진정·제보·고소·고발하거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공익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가. 공익신고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를 한 경우

나.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근로관계상의 특혜를 요구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공익신고를 한 경우

3. “공익신고등”이란 공익신고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수사·소송 및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에 관련된 조사·소송 등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4. “공익신고자”란 공익신고를 한 사람을 말한다.

5. “공익신고자등”이란 공익신고자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수사·소송 및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에 관련된 조사·소송 등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사람을 말한다.

6. “불이익조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가.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

나.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

다.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라.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의 차별과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마. 교육 또는 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 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
바.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사.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監査)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아. 인허가 등의 취소, 그 밖에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
자. 물품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해지(解止), 그 밖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
7. “내부 공익신고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신고자를 말한다.
가.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자
나.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과 공사·용역계약 또는 그 밖의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침해행위의 예방과 확산 방지 및 공익신고자등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기업은 직장 내 공익신고자등이 보호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의 공익침해행위 예방활동 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

순천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18.10.01 조례 제1921호 순천시 팀제 전환에 따른 담당단위 명칭 일괄개정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를 처리하고 공익신고자 등을 보호·지원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를 예방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며 투명하고 깨끗한 지역사회 풍토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익침해행위”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공익신고”, “공익신고등”이란 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3. “공익신고자”, “공익신고자등”이란 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4. “내부 공익신고자”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5. “공익신고자 보호 우수기업”(이하 “우수기업”이라 한다)이란 공익신고자 보호 제도를 도입하여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인정된 기업을 말한다.
6. “공익신고자 보호 환경조성사업”(이하 “환경조성사업”이라 한다)이란 공익침해 취약분야로 공익신고 처리 시스템 및 신고자 보호기반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지정된 사업을 말한다.
7. “공익신고 보조금”이란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 이외의 자가 행하는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를 위한 기반구축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보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익신고의 처리,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효과적인 공익신고 처리,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예산과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

제4조(공익신고센터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효율적인 공익신고의 접수와 처리를 위하여 공익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공익신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익신고 상담과 접수 및 처리
2.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
3. 공익신고자 등에 대한 상담 및 구제절차 안내
4. 그 밖에 공익신고 및 신고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사업

제5조(공익신고의 처리) ① 시장은 공익신고를 접수하였을 때나 국민권익위원회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공익신고를 이송 받았을 때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공익신고의 조사기간은 60일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조사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처리기간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를 끝냈을 때에는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공익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관할에 속하지 않은 공익신고를 접수하였거나, 이송 받은 때에는 바로 해당 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공익침해행위의 확산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도 개선 등 예방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공익신고자등의 보호) ① 시장은 공익신고자등과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 노출되거나 공익신고등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익신고의 접수·처리 과정에서 다른 조사기관 등이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시장은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공익신고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의 구제절차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④ 공익신고의 접수와 처리에 관련된 공무원이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신고 내용을 누설한 경우에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보상금 지급신청 안내) ① 시장은 공익신고 처리결과 시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신고자가 내부 공익신고자인 경우에 한한다.

② 시장은 동일한 원인에 기하여 다른 법률 또는 조례 등에서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보상·포상금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보상금과 중복해서 지급되지 않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8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시장은 공익신고로 현저히 시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사람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사람에 대하여 국민

권익위원회에 포상금 지급 대상으로 추천할 수 있다.

제3장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

제9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공익신고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순천시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육성과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관련 교육훈련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정책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3.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공공기관, 민간기업, 시민·사회 단체와의 네트워크 구축과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4. 공익신고자 보호 우수기업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환경조성사업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관련 공적자에 대한 표창
 7. 그 밖에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 및 공익신고자 보호 등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제10조(위원 임기) 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공익신고 사안 발생 시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 과반수의 동의로서 임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신고자 또는 조사기관의 담당자, 이해 관계자 등에게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익신고자보호

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8.10.01>

⑤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우수기업 선정 및 조성사업 지원 등

제12조(우수기업 선정)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는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기업을 우수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공익신고자 보호 규정의 정관 또는 사규 명시
2. 공익신고 접수·처리업무 담당 부서 및 신고 상담창구 설치
3. 공익신고 접수·처리 절차 등 시스템 구축
4. 임직원 대상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교육 실시
5. 공익신고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 도입
6. 그 밖에 위원회에서 정한 시책

② 제1항에 의한 우수기업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3조(우수기업 대상 지방세 감면 등) ① 시장은 우수기업 대상으로 관련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우수기업에 대하여 관련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기간 세무조사, 소방·환경 등 각종 시설 점검을 유예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재화나 서비스의 조달계약 또는 구매 시 우수기업을 관련 규정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우수기업에 대한 홍보 지원 등 그 밖의 우대조치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4조(환경조성사업 선정) ① 시장은 공익침해행위가 다수 발생하거나 공익 신고가 빈발하는 분야를 대상으로 주민 또는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기관과 단체 등의 신청을 받아 환경조성사업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환경조성사업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시장은 환경조성사업으로 선정된 분야의 기관, 단체 등을 대상으로 공익침해 행위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환경조성사업 대상 공익신고 보조금 지급) 시장은 환경조성사업에 대해 관련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16조(공익신고책임관 지정 등) ① 시장은 공익신고자보호업무 담당과장을 공익신고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②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교육, 공익신고의 상담·접수·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도록 한다.

제17조(민간협력) 시장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정착을 위하여 민간협력 강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지역 내 기업, 경제단체, 시민단체 등과의 협의체 구성·운영
2. 공익신고자 보호 교육프로그램 개발, 교육프로그램 시행에 참여하는 기업이나 교육기관에 대한 비용의 지원
3. 지역 내 모범사례의 발굴 및 확산을 위한 홍보 지원
4.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숍 개최 등

제18조(표창) 시장은 공익신고자 보호에 대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개인, 기업 및 단체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제19조(민원사무처리의 특례) 시장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민원사무는 다른 민원사무에 우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정진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제3487호
----------	--------

발의연월일 : 2021. 7. 1.

발 의 자 : 서정진 · 장숙희
이현재 의원

1. 개정이유

- 민간위탁사무의 중요내용 변경 시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도록 하고, 위탁사무의 재계약 시 성과평가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여 민간위탁제도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다른 위탁사무 추가 또는 전면 변경, 기존 위탁사무의 분리 및 그 밖에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의 중요내용 변경 시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함.
(안 제2조제6호 신설)
- 민간위탁사무의 재계약 보고 시 성과평가 결과를 제출하도록 함.
(제6조제3항 신설)

3. 개정조례안 : 별첨

4.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104조

5. 예산상황 : 예산의 범위에서 수립·시행하는 계획에 따른 재정 수반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중요내용”이란 다른 위탁사무 추가 또는 전면 변경, 기존 위탁사무의 분리 사항 및 그 밖에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제6조제1항 중 “경우에는”을 “경우와 위탁사무의 중요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제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제2항의 위탁사무 재계약 보고 시에는 제24조에 따른 성과 평가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5. (생략) <u><신설></u>	제2조(정의) ----- -----. 1. ~ 5. (현행과 같음) 6. “중요내용”이란 다른 위탁사무 추가 또는 전면 변경, 기존 위탁사무의 분리 사항 및 그 밖의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제6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4조의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u>경우에</u> 는 순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 3. (생략)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의회의 동의를 받은 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 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u><신설></u>	제6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 ----- ----- <u>경우와</u> 위탁사무의 <u>중요내용에 변경이</u> 있는 경우에는 -----. 1. ~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제②항의 위탁사무 재계약 보고 시에는 제24조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법

[시행 2019. 12. 25.] [법률 제16057호, 2018. 12. 24., 타법개정]

-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 2021. 3. 31.] [전라남도순천시조례 제2241호, 2021. 3. 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따라 순천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및 조례, 규칙에 규정된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시장의 권한을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위탁사무”란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 사무를 말한다.
4.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5.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위탁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

제5조(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시장은 제4조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제6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4조의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순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2.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3. 기타 연간 위탁금액 5천만원 이하의 사무로서 의회에 보고한 경우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의회의 동의를 받은 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민간위탁 동의안) ① 시장이 제6조에 따라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민간위탁기간
6. 수탁자 선정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8.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기타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은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예산안 및 보고안 등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제8조(수탁기관 선정기준) ①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장비·시설 및 기술수준
2. 재정적인 부담능력
3.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4. 수탁기관 노동자의 고용·노동조건
5. 책임능력 및 공신력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민간위탁 대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위탁기간 내 제23조 회계감사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수탁기관이 제18조에 따른 의무를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제9조(수탁기관 선정방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시장은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 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해당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에서 제8조에 따른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수탁기관선정위원회) ① 시장은 수탁기관의 선정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탁사무별로 순천시 수탁기관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수탁기관 선정 심사
2. 수탁기관의 재계약 결정 심사

③ 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서류 등의 제출 요구
2. 관계 공무원, 이해관계인 및 참고인에 대한 의견진술의 요구
3.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 확인

④ 제3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1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되,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외부위원의 수는 3분의 1 이상으로 하고 심의가 끝나면 위원회는 해산한 것으로 본다.

1. 순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3명

2. 변호사·공인회계사·기술사·건축사·노무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4. 대학에서 해당 민간위탁사무 분야와 관련된 학과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5. 관계공무원
 6. 그 밖에 위원회 심의의 전문성·공정성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3. 위원이 사망·질병 또는 장기간 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6. 위원이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제14조(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9조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불복하는 자는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11조를 준용한다.

③ 시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계약체결 등) ① 시장은 사무를 위탁할 경우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내용은 공증을 해야 한다.

1. 수탁기관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기간
3. 위탁사무 및 그 내용
4.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노동자에 대한 고용·노동조건에 관한 사항
6. 지도·점검, 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탁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③ 시장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1회에 한하여 90일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일시 연장할 수 있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탁계약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16조(재계약) ① 시장은 위탁사무를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 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수탁기관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적정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제22조의 지도·점검에 따른 시정요구 결과와 제24조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 그 밖에 회계감사를 포함한 각종 감사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17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① 위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시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 위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한다.

제18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시장의 승인 없이 위탁받은 사무의 목적, 내용 및 정해진 조건 외에 위탁시설·장비·비용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탁기관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위탁사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사무의 지연처리,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불공정한 사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 징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기관은 관계법령, 이 조례 및 위수탁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④ 수탁기관은 사정의 변경으로 위탁사무의 내용 또는 위탁사무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위탁사무를 인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시장은 위탁사무의 인계, 중단, 폐지의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시설을 증·개축하거나, 추가로 시설을 신축하는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시장은 제5항에 따라 증·개축 또는 추가로 신축하는 시설에 대하여 이를 시장에게 기부하게 할 수 있다.

⑦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사무를 다른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다만,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에 대해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시 위탁할 수 있다.

⑧ 수탁기관은 위탁사무를 수행하는 노동자의 고용·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사무편람) ① 수탁기관은 위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처리기간·처리과정·처리기준·구비서류·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0조(사용료 징수 등) ① 시장은 위탁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 등에게 법령 또는 별도의 조례 등에서 정하는 소정의 사용료·수수료·비용 등을 수탁기관이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사용료·수수료·비용 등을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시설운영과 관련한 사용료 등의 일부를 시장에게 납부하게 하거나, 시설운영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운영지원) 시장은 수탁기관이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지도·점검 등) ①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 및 지도·점검 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시정요구 및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시정요구 및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경우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3조(감사) ① 수탁기관은 매 사업년도마다 사업별로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이 지정한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별도 외부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회계 감사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② 그 밖에 회계감사의 절차 및 방법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위탁사무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감사를 실시한다.

제24조(성과평가) ① 시장은 민간위탁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위탁 기간의 만료 90일 전까지 위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평가 또는 감사 등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를 전문평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25조(위탁의 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제18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수탁기관이 주요 위수탁협약 조건을 위반한 때

3. 임직원이 위탁사업과 관련하여 금고형 이상의 자유형 및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았을 때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위탁비용 지원금의 환수, 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한 사용허가의 취소,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순천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계수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제3488호
----------	--------

발의연월일 : 2021. 7. 1.

발 의 자 : 박계수 · 이영란
의원

1. 제정이유

- 난임부부에게 난임치료에 관한 한의학적 지원을 통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 줌으로써 난임부부의 건강을 도모하고 결혼과 출산에 유리한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여 결혼과 출산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난임”, “한방난임치료”에 대한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 한방난임사업의 지원대상을 규정함.(안 제4조)
- 지원사업 및 내용을 규정함.(안 제5조~제6조)
- 중복지원 제한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제9조)
- 관련사업 종사자에 대한 정보누설 금지를 규정함.(안 제10조)

3. 제정조례안 : 별첨

4. 관련법령 : 「모자보건법」,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한의학육성법」

5. 예산상황 : 예산의 범위에서 수립·시행하는 계획에 따른 재정 수반

순천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조(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 제3조 및 제11조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10조에 따라 난임부부에게 한방난임치료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고 적극적인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임”이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한다.
2. “한방난임치료”란 「한의학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하여 난임치료를 위한 한약투여, 침구치료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순천시에 주소를 두고, 난임 진단을 받은 남성과 여성으로,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법적부부로 한다. 단, 구조적 병변은 제외한다.

제5조(지원내용)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4조의 지원 대상자 부부에게 한방난임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난임 극복과 출산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난임치료를 위한 한약투여, 침구치료 등 한방난임치료 지원
2. 한방난임치료 상담, 교육 및 홍보
3. 그 밖에 한방난임치료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시장이 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위탁)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한방 난임치료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8조(중복지원 제한) 시장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액의 차액만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환수) 시장은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제10조(정보누설의 금지) 제6조에 따른 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

관련법령 등 자료

모자보건법 「모자보건법」

[시행 2021. 1. 1.] [법률 제17007호, 2020. 2. 18.,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0. (생략)

11. “난임(難妊)”이란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한다.

제11조(난임극복 지원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난임 등 생식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난임극복 지원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2. 난임 관련 상담 및 교육
3. 난임 예방 및 관련 정보 제공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 2014. 3. 18.] [법률 제12449호, 2014. 3. 18., 일부개정]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강구 및 지원을 위하여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한의학육성법

[시행 2019. 12. 25.] [법률 제16057호, 2018. 12. 24.,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의학”이란 우리의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韓醫學)을 기초로 한 한방의료행위와 이를 기초로 하여 과학적으로 응용·개발한 한방의료행위(이하 “한방의료”라 한다) 및 한약사(韓藥事)를 말한다.
2. ~ 5. (생략)

관련 조례 현황

조례 : 29개소

- 도, 광역시 : 7개
- 지자체 : 22개

순천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미연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제3498호
----------	--------

발의연월일 : 2021. 7. 2.

김미연 · 이영란 · 오행숙

발 의 자 : 박계수 · 장숙희 · 이현재

이복남 · 허유인 의원

1. 개정이유

-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재난상황 극복을 위한 백신 접종률 제고 및 집단면역 형성 조기달성을 위해 지원 인센티브 근거 마련
- 감염병 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를 위한 근거 조항 추가

2. 주요내용

- 가. 감염병의 예방 조치 및 지원 규정(제20조)
- 나. 감염병 교육 및 홍보 지원 규정(제23조)

3. 개정조례안 : 별첨

4. 관련법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5. 예산상황 : 해당없음

순천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 제목 “(감염병의 예방 조치)”를 “(감염병의 예방 조치 및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한다”를 “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로 한다.

제20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방역용품 및 방역약품 지원
2. 감염병 진단검사비 및 예방접종 비용 지원
3. 집단면역 형성을 위해 예방접종을 제고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제23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시장은 감염병 예방 및 보건위생 관련 홍보물을 제작·배포할 수 있으며, 감염병 예방문화 정착을 위해 캠페인을 전개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0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시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법 제4 9조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 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 야 한다.	제20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및 지 원) ----- ----- ----- ---- 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신 설>	1. 방역용품 및 방역약품 지원
<신 설>	2. 감염병 진단검사비 및 예방접 종 비용 지원
<신 설>	3. 집단면역 형성을 위해 예방접 종률 제고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제23조(감염병 교육 및 홍보) ① ~ ③ (생략)	제23조(감염병 교육 및 홍보)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시장은 감염병 예방 및 보건위 생 관련 홍보물을 제작·배포할 수 있으며, 감염병 예방문화 정착 을 위해 캠페인을 전개할 수 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특별자치도·시·군·구가 부담할 경비) 다음 각 호의 경비는 특별자치도와 시·군·구가 부담한다.

1. 제4조제2항제13호에 따른 한센병의 예방 및 진료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 경비의 일부
2. 제24조제1항 및 제25조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에 드는 경비
3. 제24조제2항 및 제25조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이 예방접종을 하는 데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
4. 제36조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감염병관리기관의 감염병관리시설의 설치·운영에 드는 경비
5. 제37조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한 격리소·요양소 또는 진료소 및 같은 조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의 감염병관리시설 설치·운영에 드는 경비
6. 제47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교통 차단 또는 입원으로 인하여 생업이 어려운 사람에 대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최저보장수준 지원
7. 제47조, 제48조, 제49조제1항제8호·제9호·제13호 및 제51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시·군·구에서 실시하는 소독이나 그 밖의 조치에 드는 경비
8. 제49조제1항제7호 및 제12호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의 사를 배치하거나 의료인·의료업자·의료관계요원 등을 동원하는 데 드는 수당·치료비 또는 조제료
- 8의2. 제49조제1항제12호의2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동원한 의료기관 병상, 연수원·숙박시설 등 시설의 운영비 등 경비
9. 제49조제2항에 따른 식수 공급에 드는 경비
10. 제62조에 따른 예방위원의 배치에 드는 경비
- 10의2. 제70조의6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심리지원에 드는 경비
- 10의3. 제70조의6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위탁하여 관계 전문기관이 심리지원을 실시하는 데 드는 경비
11.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특별자치도·시·군·구가 실시하는 감염병 예방 사무에 필요한 경비

순천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20. 12. 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민의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염병”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
2. “감염병환자”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감염병환자등”이란 감염병 환자, 법 제2조제14호의 감염병 의사환자 및 법 제2조제15호의 병원체 보유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등)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감염병환자등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순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위하여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의료기관 및 의료인 단체는 시가 수행하는 감염병의 발생 감시와 예방·관리 및 역학조사 등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감염병 예방 및 관리사업) 시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 대책
2. 감염병환자등의 진료 및 보호
3.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
5.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 분석 및 제공
6. 감염병에 관한 조사 및 연구
7.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전문 인력의 양성
8.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약품 등의 비축
9. 그 밖에 법에서 규정한 사업 및 감염병 예방·확산 방지에 필요한 사업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법 제7조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염병 예방·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주요 감염병의 예방·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
3. 감염병 전문인력의 양성방안 및 위기 대응 역량의 강화방안

4. 감염병 관련 통계 및 정보의 관리방안

5. 감염병 대비 의약품·장비 등의 비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감염병관리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하기 위하여 순천시 감염병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

2. 감염병 관련 재난 및 응급의료 대응준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순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명

2. 감염병 관련 의료인 및 감염병 관련 의료기관, 의료인 단체

3. 감염병 업무 및 재난안전 업무 담당 국·소장

4. 그 외 감염병에 관한 지식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직위와 관련되어 위촉·임명된 위원은 해당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시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감염병 표본감시 등) ① 시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의 장에게 감염병의 표본감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감염병의 예방·관리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표본감시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집한 정보 중 시민 건강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관련 기관·시설·단체 또는 시민들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표본감시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표본감시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역학조사) ① 시장은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거나, 감염병 여부가 불분명하나 발병원인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없이 법 제18조에 따른 역학조사를 하고, 그 결과에 관한 정보를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의료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역학조사를 하기 위하여 역학조사반을 설치하여야 한다.
- ③ 누구든지 시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정당한 사유없이 역학조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회피하는 행위
 2.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3.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
- ④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의 내용, 시기 및 방법과 제2항에 따른 역학조사반의 구성 및 임무 등에 관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예방접종) ① 시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법 제24조제1항의 질병에 대하여 시 보건소를 통하여 필수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시 보건소를 통하여 임시예방접종을 하여야 한다.

1.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시장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할 것을 요청한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예방접종업무를 영 제20조에 따라 시 구역 안에 있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감염병 위기관리대책본부 구성) ① 시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른 감염병 관련 위기경보 단계 발령 시 감염병 업무의 비상대책 지원을 위하여 순천시 감염병 위기관리 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별 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대책본부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등) ① 시장은 법 제36조에 따라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고 감염병환자 등을 진료하는 시설(이하 “감염병 관리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감염병 관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을 감염병 관리기관에 지원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감염병 발생 등 긴급상황 발생 시 감염병 관리기관에 진료개시 등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⑤ 감염병 관리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이 감염병 관리시설을 설치 및 운영할 경우 법 제36조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3조(감염병 위기 시 감염병관리기관의 설치 등) ① 시장은 감염병환자가 대량으로 발생하거나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 만으로 감염병환자들을 모두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을 일정 기간 동안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

2. 격리소와 요양소 또는 진료소의 설치·운영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36조에 따라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을 감염병관리기관에 지원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

⑤ 시장은 감염병 발생 등 긴급상황 발생 시 감염병관리기관에 진료개시 등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제14조(감염병환자등의 입소 거부 금지) 감염병관리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염병환자등의 입소(入所)를 거부할 수 없다.

제15조(감염병환자등의 관리) ① 감염병 중 특히 전파 위험이 높은 감염병으로서 제1급 감염병 및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한 감염병에 걸린 감염병환자등은 감염병 관리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감염병 관리기관의 병상(病床)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감염병환자 등을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감염병관리기관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가(自家) 또는 감염병관리시설에서 치료하게 할 수 있다.

1.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입원치료 대상자가 아닌 사람

2. 감염병환자등과 접촉하여 감염병이 감염되거나 전파될 우려가 있는 사람

제16조(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① 시장은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법 제42조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염병환자등이 있다고 인정되는 주거시설, 선박·항공기·열차·버스 등 운송수단 또는 그 밖의 장소에 들어가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진찰 결과 감염병환자 등으로 인정될 때에는 동행하여 치료받게 하거나 입원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진찰·격리·치료 또는 입원 조치를 하거나 동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17조(감염병환자등의 입원 통지) 시장은 감염병환자등이 제16조에 따른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원치료 대상자와 그 보호자에게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의 조치) 시장은 법 제4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건강진단을 받거나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예방접종을 받게 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감염병환자등의 가족 또는 그 동거인

2. 감염병 발생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또는 그 지역에 출입하는 사람으로서 감염병에 감염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

3. 감염병환자등과 접촉하여 감염병에 감염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

제19조(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 시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법 제47조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0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시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법 제49조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1조(소독 의무) 시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법 제51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나 소독을 실시하거나 쥐, 위생해충 등의 구제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2조(방역소독 실시권고) 시장은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의무소독대상 시설이 아닌 곳의 경우에도 다수가 이용하여 공중위생상 소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 등에 대하여 소독을 실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23조(감염병 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교육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감염병 관리기관을 지정 또는 설치한 경우 시민에게 즉시 홍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민이 알아야 하는 감염병 발생 시 발생상황과 대응방법 등의 관련 정보를 시민에게 신속하게 홍보하여야 한다.

제24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감염병 예방과 효율적 치료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전라남도 및 인근 지자체, 순천교육지원청, 지역 의료기관 등과 모든 정보를 공유하고 긴밀한 의료 네트워크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조례 제2219호, 2020.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순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3493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21. 7. 1.

1. 개정이유

- 청소년수련원 야영장 시설 개선공사 완료로 사용료 현행화
-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 개선 권고사항 반영

2. 주요내용

- 청소년시설의 사용료와 이용료 용어 정리(안 제2조 ~ 제10조)
- 청소년수련원 야영장 사용료 정비(안 제8조 별표 3)

당초				변경			
시설별		단위	금액(원)	시설별		단위	금액(원)
야영장	일 반	1인/1박	5,000	제1야영장	일반 캠핑 장	1박	20,000
	대 학 생	〃	4,000	제2야영장	일반 캠핑 장	〃	30,000
	중 고 생	〃	3,000		오토캠핑장(소)	〃	40,000
	초등학생이하	〃	2,000		오토캠핑장(대)	〃	50,000

-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의 청소년시설 이용료 감면 대상 구체화
(안 제9조 별표 4)

3. 개 정 안 : 별첨

4. 관련법령 : 해당없음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해당 없음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21. 5. 31. ~ 6. 20.) 결과 의견 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21. 5. 31.(여성가족과-11532호)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21. 5. 28.(기획예산실-7699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21. 5. 31.(순천시 공고 제2021-1284호)

순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를 삭제하고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사용료”란 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하여 “이용료”란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5조의 제목 “(이용자 범위)”를 “(사용자 범위)”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이용제한)”를 “(사용제한)”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이용료)”를 “(사용료 및 이용료)”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이용료는”을 “사용료 및 이용료는”으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이용료의 감면)”을 “(사용료 및 이용료의 감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를 “별표 4에”로, “사용료”를 “사용료 및 이용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이용료를”을 “사용료 및 이용료를”로, “이용료의”를 “사용료 및 이용료의”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이용료 등의 반환)”을 “(사용료 등의 반환)”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이용료”를 “사용료 및 이용료”로 한다.

별표 3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 사용료 및 이용료를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청소년수련관 사용료 및 이용료(제8조와 관련)

1. 시설 사용료

시 설 명	사용기준	사 용 료		참 고
		평 일	토·공휴일	
소 극 장	주간 2시간	30,000원	40,000원	시간 초과시 시간당 10,000원
	야간 2시간	50,000원	60,000원	
	1일	90,000원	100,000원	야간요금별도징수
영 화 관	주간 2시간	50,000원	60,000원	시간 초과시 시간당 20,000원
	야간 2시간	70,000원	80,000원	
	1일	150,000원	160,000원	야간요금별도징수
야외공연무대	주간 3시간	50,000원	60,000원	시간 초과시 시간당 20,000원
	야간 3시간	70,000원	80,000원	
	1일	110,000원	120,000원	야간요금별도징수

시 설 명	사용기준	사 용 료		참 고
		청소년	일 반	
댄스연습실	2 시 간 (기본사용시간)	무 료	평 일 20,000원 토,공휴일 30,000원	기본 사용시간 초과 시간당 5,000원
창 극 실 동아리실 어울림실	2 시 간 (기본사용시간)	무 료	평 일 15,000원 토,공휴일 20,000원	기본 사용시간 초과 시간당 5,000원

※ 주간 09:00~18:00, 야간 18:00~21:00

2. 부대시설 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종 별		기 준	사 용 료	비 고
음 향 장 비	영화관	2시간	20,000	
	소극장	2시간	10,000	
	야외공연무대	3시간		
조명장비	영 화 관	2시간	20,000	○ 추가조명 설치 사용 시 시간당 10,000원 추가
	야외공연무대	2시간		
냉·난방	영 화 관	2시간	50,000	
	소 극 장	2시간	20,000	
	댄 스 연 습 실	2시간	10,000	
	창 극 실	2시간		
	어 울 림 실	2시간		
	동 아 리 실	2시간		
	야외공연무대	2시간	5,000	
마 이 크		2개	5,000	○ 마이크 추가(1개)시 3,000원 추가

※ 기본시간 : 2시간(야외공연무대 : 3시간), 사용시간 초과 시 기준금액의 20% 매시간 가산

3. 프로그램 이용료

(단위 : 원)

프 로 그 램	기 준	수강료	비 고
취미·교양	1개월	·청소년 : 무료 ·성 인 : 10,000 ~ 15,000	○ 재료비 별도
체력단련실	1개월	·청소년 : 무료 ·성 인 : 10,000	○ 이용 시간 - 평일 9시 ~ 21시 - 주말 9시 ~ 17시

청소년수련원 사용료 및 이용료(제8조와 관련)

1. 시설 사용료

(단위 : 원)

시 설 별			단 위	금 액	비 고
숙박동	일 대 학 반 생	4인실	1실/1박	40,000	○ 1명 추가 8,000원 추가
	중고생	5인실	"	40,000	○ 1명 추가 5,000원 추가
	초등학생	5인실	"	30,000	○ 1명 추가 4,000원 추가
식 비	일 반 (대 학 생)		1식당	7,000	
	중 고 생		"	5,500	
	초 등 학 생		"	4,500	
제1야영장	일 반 캠 핑 장		1박	20,000	◦ 당일 비숙박이라도 1박으로 본다
제2야영장	일 반 캠 핑 장		"	30,000	
	오 토 캠 핑 장 (소)		"	40,000	
	오 토 캠 핑 장 (대)		"	50,000	
소 강 당	평 일		1회 2시간	40,000	◦ 기본사용시간 초과할 경우 시간당 10,000원 추가
	주 말 · 공 휴 일		"	60,000	◦ 기본사용시간 초과할 경우 시간당 15,000원 추가
강 당	평 일		1회 2시간	60,000	◦ 기본사용시간 초과할 경우 시간당 15,000원 추가
	주 말 · 공 휴 일		"	80,000	◦ 기본사용시간 초과할 경우 시간당 20,000원 추가
다 목 적 실내강당	평 일		"	80,000	◦ 기본사용시간 초과할 경우 시간당 20,000원 추가
	주 말 · 공 휴 일		"	100,000	◦ 기본사용시간 초과할 경우 시간당 25,000원 추가
운 동 장	평 일		회당	150,000	
	주 말 · 공 휴 일		"	200,000	
냉·난방비	소 강 당 · 강 의 실		시간당	15,000	
	강당·다목적대강당		"	20,000	

※ 익일 12:00 초과 시 1일(1박)로 처리

2. 이용료

(단위 : 원)

시 설 별		단 위	금 액	비고
물 놀 이 장	일 반 (대 학 생)	1회/1인	5,000	
	중 고 생	"	4,000	
	초 등 학 생 이 하	"	3,000	
인 라 인 스 케 이 트 장	일 반	1인 시간당	5,000	
	중 고 생	"	2,000	
	초 등 학 생 이 하	"	1,000	
인 공 압 벽	일 반	1인 시간당	5,000	수련원 프로그램 위탁할 경우 사용가능
	중 고 생	"	3,000	
	초 등 학 생 이 하	"	2,000	
도 예 체 험	일 반	1인 회당	5,000	
	중 고 생	"	4,000	
	초 등 학 생 이 하	"	3,000	
모 험 시 설	일 반	1인 회당	3,000	수련원 프로그램 위탁할 경우 사용가능
	중 고 생	"	1,500	
	초 등 학 생	"	1,000	
비 즈 공 예	일 반	1인 회당	5,000	
	중 고 생	"	3,000	
	초 등 학 생	"	2,000	

유스호스텔 시설 사용료(제8조와 관련)

(단위 : 원)

구 분		청 소 년		일반인(대학생)	비 고
		초등학생	중고생		
숙박료 (1인 1박)		6,000	8,000	10,000	
식 대 (1인 식)		4,500	5,500	7,000	특식주문가능
강 당 강의실	평일	2시간 이하 50,000 2시간 초과 시간당 20,000			
	주말	2시간 이하 60,000 2시간 초과 시간당 25,000			
1. 20인 이상 단체는 숙박료에 한정하여 10퍼센트 감면 2. 1박은 당일 12:00 ~ 다음날 12:00까지(단. 이용시간 초과할 경우 1박 추가) 3. 한국 유스호스텔연맹회원증 소지자에게는 이용요금에서 10퍼센트 감면 (단, 식대는 제외) 4. 사용료 냉난방비 포함					

[별표 4]

사용료 및 이용료 감면(제9조와 관련)

① 사용료 감면

〈면제〉

1. 국가, 전라남도 또는 순천시가 주관 및 주최하는 청소년 행사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서 3개월 이내 발급한 수급자증명서를 소지한 사람
3. 「사회복지사업법」 또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시설의 청소년
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로서 3개월 이내 발급한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소지한 사람
5.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6. 「순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 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
7. 「순천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세대증”을 소지한 세대주 및 그 세대원
8.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0% 감면〉

1.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 대상자
2. 「순천시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 미 인체조직 기증자 및 기증희망자

② 이용료 감면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면제대상자
 - 가.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 나.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국가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때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다. 국가유공자 중 애국지사 및 상이등급 1급·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면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

가. 독립유공자와 그 배우자

나.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독립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때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다. 독립유공자 중 애국지사인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면제대상자

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중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

나.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면제대상자

가. 5·18민주유공자와 그의 배우자

나. 5·18민주유공자의 유족 중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할 때의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5·18민주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다.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장애등급 1급·2급 또는 3급 판정을 받은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58조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면제대상자

가.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배우자

나. 특수임무유공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특수임무유공자

의 부 또는 모인 때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다. 특수임무유공자 중 상이등급 1급·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면제대상자

가. 의상자. 다만, 의상자 중 부상등급이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활동 보조자와 동행하는 경우에는 그 활동 보조자 중 1명을 포함한다.

나. 의사자유족 중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선순위자. 다만, 선순위자가 배우자인 경우에는 그 자녀를 포함한다.

다. 의상자가족 중 배우자 및 자녀

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면제대상자

가. 등록포로

나. 억류지출신 포로 가족

9.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생략 1. ~ 3. (생략) 4. “ <u>시설의 이용</u> ”이란 제1호의 <u>규정에 의한 시설을 이용하거나</u> <u>시설에서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u> <u>램을 수강하는 것을 말한다.</u> 5. “ <u>이용료</u> ”란 제1호의 시설을 <u>이용할 때 이용자가 부담하는 비</u> <u>용으로 시설 사용료와 교육 프로</u> <u>그램 수강료 및 재료비, 수련활</u> <u>동비를 말한다.</u>	제2조(정의) <u>현행과 같음</u> 1. ~ 3. (현행과 같음) <u><삭 제></u> 5. “ <u>사용료</u> ”란 시설을 이용하는 자로 <u>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하여 “이</u> <u>용료</u> ”란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는
제5조(<u>이용자 범위</u>) ① 시설은 청소 년 또는 청소년 단체가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u>사용자 범위</u>) ----- ----- -----.
제7조(<u>이용제한</u>)시장은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 될 때에는 시설의 <u>이</u> <u>용을 제한할 수 있다.</u>	제7조(<u>사용제한</u>)----- ----- <u>사</u> <u>용</u> -----.
제8조(<u>이용료</u>) 시설의 <u>이용료</u> 는 별표 3과 같다.	제8조(<u>사용료 및 이용료</u>) --- <u>사용료</u> <u>및 이용료</u> 는 -----.
제9조(<u>이용료의 감면</u>) ① 시장은 다 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식비 및 숙박료를 제외 한 <u>이용료</u> 를 감면할 수 있다. 1. <u>면제</u> 가. <u>국가, 전라남도 또는 순천</u> <u>시가 주관 및 주최하는 청소</u> <u>년행사</u>	제9조(<u>사용료 및 이용료의 감면</u>) ① - - <u>별표 4에</u> ----- ----- -- <u>사용료 및 이용료를</u> -----. <u><삭 제></u>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
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
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라. 「사회복지 사업법」 또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시설
의 청소년

마. 「한부모 가족 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사. 「순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
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

아. 「순천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
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세대증”을 소지한 세대주 및
그 세대원

자. 「순천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상자와 그 가족 또는 의사
자의 유족

차.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
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카.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50% 감면

가.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
로우대 대상자

나. 「순천시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에 따른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 및 기증희망자

② 제1항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사람은 이용료의 감
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이용료 등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 미사용 기간에 해당하는
이용료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별표 3]

청소년수련관 시설사용료 및 교육수강료(제8조와 관련)

1. 시설사용료(단체편의시설)

(단위 : 원)

〈삭 제〉

②----- 사용료 및 이용료를
----- 사용료 및 이용
료의 -----
-----.

제10조(사용료 등의 반환) -----

사용료 및 이용료 ----- .

[별표 3]

청소년수련관 사용료 및 이용료(제8조와 관련)

1. 시설 사용료

(단위 : 원)

시 설 명	사용기준	사 용 료		참 고
		평 일	토·공휴일	
소 극 장	주간 2시간	30,000원	40,000원	시간 초과시 시간당 10,000원
	야간 2시간	50,000원	60,000원	
	1일	90,000원	100,000원	야간요금별도정수
영 화 관	주간 2시간	50,000원	60,000원	시간 초과시 시간당 20,000원
	야간 2시간	70,000원	80,000원	
	1일	150,000원	160,000원	야간요금별도정수
야 외 공 연 무 대	주간 3시간	50,000원	60,000원	시간 초과시 시간당 20,000원
	야간 3시간	70,000원	80,000원	
	1일	110,000원	120,000원	야간요금별도정수

시 설 명	사용기준	사 용 료		참 고
		청소년	일 반	
<u>체력단련실</u>	<u>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u>	<u>무 료</u>	<u>월 10,000원</u>	
댄스연습실	2 시 간 (기본사용시간)	무 료	평 일 20,000원 토·공휴일 30,000원	기본 사용시간 초과 시간당 5,000원
창극실 동아리실 어울림실	2 시 간 (기본사용시간)	무 료	평 일 15,000원 토·공휴일 20,000원	기본 사용시간 초과 시간당 5,000원

※ 주간 09:00~18:00, 야간 18:00~21:00

2. 부대시설 사용료(기본 사용시간 요금)

시 설 명	사용기준	사 용 료		참 고
		평 일	토·공휴일	
소 극 장	주간 2시간	30,000원	40,000원	시간 초과시 시간당 10,000원
	야간 2시간	50,000원	60,000원	
	1일	90,000원	100,000원	야간요금별도정수
영 화 관	주간 2시간	50,000원	60,000원	시간 초과시 시간당 20,000원
	야간 2시간	70,000원	80,000원	
	1일	150,000원	160,000원	야간요금별도정수
야 외 공 연 무 대	주간 3시간	50,000원	60,000원	시간 초과시 시간당 20,000원
	야간 3시간	70,000원	80,000원	
	1일	110,000원	120,000원	야간요금별도정수

시 설 명	사용기준	사 용 료		참 고
		청소년	일 반	
<u><삭제></u>				
댄스연습실	2 시 간 (기본사용시간)	무 료	평 일 20,000원 토,공휴일 30,000원	기본 사용시간 초과 시간당 5,000원
창극실 동아리실 어울림실	2 시 간 (기본사용시간)	무 료	평 일 15,000원 토,공휴일 20,000원	기본 사용시간 초과 시간당 5,000원

※ 주간 09:00~18:00, 야간 18:00~21:00

2. 부대시설 사용료

(단위 : 원)

- 영 화 관
·특수조명 : 20,000원 ·음향 : 20,000원 ·냉·난방 : 50,000원
- 소 극 장
·비디오프로젝트 : 20,000원 ·음향 : 10,000원 ·냉·난방 : 20,000원
- 댄스연습실 ○ 창극실 ○ 어울림실 ○ 동아리실
·냉·난방 : 10,000원
- 야외공연무대
·조명 : 20,000원 ·음향 : 10,000원 ·냉·난방 : 5,000원
※ 추가조명 설치 사용시 시간당 10,000원 추가
- 마이크 기본(2개) : 5,000원 · 1개 추가 : 3,000원
※ 기본시간은 2시간(야외공연무대는 3시간)으로 하며, 사용시간 초과시 기준금액의 20% 매시간 가산

<신설>

3. 교육수강료

(단위 : 원)

구분	기준	수강료	비고
취마교양	1개월	·청소년 : 무료 ·성 인 : 10,000 ~ 15,000	○ 재료비 별도
<u><신설></u>			

청소년수련원 시설 사용요금

(단위 : 원)

시 설 별	단 위	금 액	비고
숙박동	일반 대학생 4인실	1실 / 1박 40,000	○ 1명 추가 8,000원 추가

구 분	종 별	기 준	사 용 료	비 고
음향비	영화관	2시간	20,000	
	소극장	2시간	10,000	
	야외공연무대	3시간		
조명장비	영화관	2시간	20,000	○ 추가조명 설치 사용시 시간당 10,000원 추가
	야외공연무대	2시간		
냉·난방	영화관	2시간	50,000	
	소극장	2시간	20,000	
	댄스연습실	2시간	10,000	
	창극실	2시간		
	어울림실	2시간		
	동아리실	2시간		
	야외공연무대	2시간	5,000	
마이크		2개	5,000	○ 마이크 1개 추가시 3,000원 추가

※기본시간 : 2시간(야외공연무대 : 3시간), 사용시간 초과시
기준금액의 20% 매시간 가산

3. 프로그램 이용료

(단위 : 원)

구분	기준	수강료	비고
취마교양	1개월	·청소년 : 무료 ·성 인 : 10,000 ~ 15,000	○ 재료비 별도
체력단련실	1개월	·청소년 : 무료 ·성 인 : 10,000 ~ 15,000	○이용시간 -평일 9시 ~ 21시 -주말 9시 ~ 17시

청소년수련원 사용료 및 이용료(제8조와 관련)

1. 시설 사용료

(단위 : 원)

	중고생	5인실	"	40,000	○ 1명 추가 5,000원 추가
	초등학생	5인실	"	30,000	○ 1명 추가 4,000원 추가
식비	일 (대 학 생)	반	1식당	7,000	
	중 고 생	"	"	5,500	
	초 등 학 생	"	"	4,500	
아영장	일	반	1인/1박	5,000	◦ 당일 비숙박이라도 1박으로 본다
	대 학 생	"	"	4,000	
	중 고 생	"	"	3,000	
	초 등 학 생	"	"	2,000	
소강당	평 일		1회 2시간	40,000	◦ 기본사용시간 초과 할 경우 시간당 10,000원 추가
	주 말·공 휴 일		"	60,000	◦ 기본사용시간 초과 할 경우 시간당 15,000원 추가
강 당	평 일		1회 2시간	60,000	"
	주 말·공 휴 일		"	80,000	◦ 기본사용시간 초과 할 경우 시간당 20,000원 추가
다 목 적 실 내강당	평 일		"	80,000	"
	주 말·공 휴 일		"	100,000	◦ 기본사용시간 초과 할 경우 시간당 25,000원 추가
물 놀 이 장	일 (대 학 생)	반	1회 /1인	5,000	
	중 고 생	"	"	4,000	
	초등학생이하	"	"	3,000	
방난방 비	소강당·강의실		시간당	15,000	
	강당·다목적대강		"	20,000	
	〈신설〉				

청소년수련원 시설 사용요금

(단위 : 원)

시 설 별	단 위	금 액	비고
운 동 장	평 일	회당 150,000	
	주 말·공 휴 일	회당 200,000	
인 라 인 스케이트 장	일 반	1인 시간당 5,000	
	중 고 생	" 2,000	
	초등학생이하	" 1,000	
인공암벽	일 반	1인 시간당 5,000	수련원 프로그램 위탁할 경우 사용가능
	중 고 생	" 3,000	
	초등학생이하	" 2,000	
도예체험	일 반	1인 회당 5,000	
	중 고 생	" 4,000	
	초등학생이하	" 3,000	
모험시설	일 반	1인 회당 3,000	수련원 프로그램 위탁할 경우 사용가능
	중 고 생	" 1,500	
	초 등 학 생	" 1,000	
비즈공예	일 반	1인 회당 5,000	
	중 고 생	" 3,000	
	초 등 학 생	" 2,000	
	〈신설〉		

※ 익일 12:00 초과 시 1일(1박)로 처리

순천시 유스호스텔 사용요금

(단위 : 원)

시 설 별			단 위	금 액	비고
숙박동	일반 대학생	4인 실	1실 /1박	40,000	○ 1명 추가 8,000원 추가
	중고생	5인 실	"	40,000	○ 1명 추가 5,000원 추가
	초등 학생	5인 실	"	30,000	○ 1명 추가 4,000원 추가
식 비	일 (대 학 생) 반		1식당	7,000	
	중 고 생		"	5,500	
	초 등 학 생		"	4,500	
제1아영장	일 반 캠 핑 장		1박	20,000	◦ 당일 비숙박이라도 1박으로 본다
제2아영장	일 반 캠 핑 장		"	30,000	
	오토캠핑장(소)		"	40,000	
	오토캠핑장(대)		"	50,000	
소강당	평 일		1회 2시간	40,000	◦ 기본사용시간 초과 할 경우 시간당 10,000원 추가
	주 말·공 휴 일		"	60,000	◦ 기본사용시간 초과 할 경우 시간당 15,000원 추가
강 당	평 일		1회 2시간	60,000	"
	주 말·공 휴 일		"	80,000	◦ 기본사용시간 초과 할 경우 시간당 20,000원 추가
다 목 적 실내강 당	평 일		"	80,000	"
	주 말·공 휴 일		"	100,000	◦ 기본사용시간 초과 할 경우 시간당 25,000원 추가
	〈삭제〉				
냉 난방 비	소강당·강의실		시간당	15,000	
	강당·다목적대 강		"	20,000	
운 동 장	평 일		회당	150,000	
	주 말·공 휴 일		"	200,000	

※ 익일 12:00 초과 시 1일(1박)로 처리

2. 이용료

(단위 : 원)

시 설 별	단 위	금 액	비고
	〈삭제〉		
인 라 인 스케이트 장	일 반	1인 시간당 5,000	
	중 고 생	" 2,000	
	초 등 학 생	" 1,000	
인공암벽	일 반	1인 시간당 5,000	◦수련원 프로그램 위탁할 경우 사용 가능
	중 고 생	" 3,000	
	초등학생이하	" 2,000	
도예체험	일 반	1인 회당 5,000	
	중 고 생	" 4,000	
	초등학생이하	" 3,000	
모험시설	일 반	1인 회당 3,000	◦수련원 프로그램 위탁할 경우 사용 가능
	중 고 생	" 1,500	
	초 등 학 생	" 1,000	
비즈공예	일 반	1인 회당 5,000	
	중 고 생	" 3,000	
	초 등 학 생	" 2,000	
물놀이장	일반(대학생)	1회/1인	5,000
	중 고 생	"	4,000
	초등학생이하	"	3,000

유스호스텔 시설 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청 소 년		일반인(대 학생)	비 고
		초등학생	중고생		
숙박료 (1인 1박)		6,000	8,000	10,000	
식 대 (1인 식)		4,500	5,500	7,000	특식주문 가능
강 당 강의실 사용료	평일	2시간 이하 50,000 2시간 초과 시간당 20,000			
	주말	2시간 이하 60,000 2시간 초과 시간당 25,000			
1. 20인 이상 단체는 숙박료에 한정하여 10퍼센트 감면 2. 1박은 당일 12:00 ~ 다음날 12:00까지(단, 이용시간 초과할 경우 1 박 추가) 3. 한국 유스호스텔연맹회원증 소지자에게는 이용요금에서 10퍼센트 감면 (단, 식대는 제외) 4. 사용료 냉난방비 포함					

<신 설>

구 분		청 소 년		일반인(대 학생)	비 고
		초등학생	중고생		
숙박료 (1인 1박)		6,000	8,000	10,000	
식 대 (1인 식)		4,500	5,500	7,000	특식주문 가능
강 당 강의실	평일	2시간 이하 50,000 2시간 초과 시간당 20,000			
	주말	2시간 이하 60,000 2시간 초과 시간당 25,000			
1. 20인 이상 단체는 숙박료에 한정하여 10퍼센트 감면 2. 1박은 당일 12:00 ~ 다음날 12:00까지(단, 이용시간 초과할 경우 1박 추가) 3. 한국 유스호스텔연맹회원증 소지자에게는 이용요금에서 10퍼센트 감면 (단, 식대는 제외) 4. 사용료 냉난방비 포함					

[별표 4]

사용료 및 이용료 감면(제9조 관련)

① 사용료 감면

<면제>

1. 국가, 전라남도 또는 순천시가 주관 및 주최하는 청소년 행사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서 3개월 이내 발급한 수급자증명서를 소지한 사람
3. 「사회복지사업법」 또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시설의 청소년
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로서 3개월 이내 발급한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소지한 사람
5.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6. 「순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 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
7. 「순천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세대증”을 소지한 세대주 및 그 세대원
8.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0% 감면〉

1.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 대상자
2. 「순천시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 미 인체조직 기증자 및 기증희망자

② 이용료 감면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면제대상자
 - 가.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 나.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국가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때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 다. 국가유공자 중 애국지사상 상이등급 1급·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면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
 - 가. 독립유공자와 그 배우자
 - 나.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독립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때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 다. 독립유공자 중 애국지사인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면제대상자
 - 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중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
 - 나.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면제대상자
 - 가. 5·18민주유공자와 그의 배우자
 - 나. 5·18민주유공자의 유족 중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할 때의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5·18민주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 다.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장애등급 1급·2급 또는 3급 판정을 받은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58조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면제대상자
 - 가.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배우자
 - 나. 특수임무유공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특수임무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때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 다. 특수임무유공자 중 상이등급 1급·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면제대상자
 - 가. 의사상자. 다만, 의사상자 중 부상등급이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활동 보조자와 동행하는 경우에는 그 활동 보조자 중 1명을 포함한다.

나. 의사자유족 중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선순위자. 다만, 선순위자가 배우자인 경우에는 그 자녀를 포함한다.

다. 의상자가족 중 배우자 및 자녀

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면제대상자

가. 등록포로

나. 억류지출신 포로 가족

9.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순천시 초등학생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미애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제3483호
----------	--------

발의연월일 : 2021. 7. 1.

발 의 자 : 김미애 · 최병배
이복남 의원

1. 제안이유

- 순천시 내 초등학생에 대한 돌봄 기능을 강화하고 적절한 돌봄을 지원하여 시민의 행복 증진과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 안 제2조)
- 시장의 책무 (안 제3조)
- 타 조례와의 관계 및 적용범위 (안 제4조 ~ 안 제5조)
- 돌봄종합계획의 수립 (안 제6조)
- 돌봄 지원 사업 (안 제7조)
- 초등돌봄 지역협의체 설치 운영 등 (안 제8조 ~ 안 제12조)
- 사업위탁 (안 제13조)
- 보험 (안 제14조)
- 지도·점검 및 홍보 (안 제15조 ~ 안 제16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아동복지법」
- 예산조치 : 예산의 범위에서 수립·시행하는 지원계획에 따른 재정 수반

순천시 초등학생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초등학생의 틈새 돌봄 기능을 강화하여 아동의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적절한 돌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순천시에 거주하는 만6세 ~ 만12세 또는 순천시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2. “돌봄”이란 아동이 지역사회 내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제공되는 안전한 보호·양육 등의 지원을 말한다.
3. “돌봄 시설”이란 제2호의 돌봄 사업을 수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아동 돌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안정적인 제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아동 돌봄을 위한 정책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돌봄 사업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아동복지법」 등 상위 법령에 따라 지원되는 돌봄 사업
2.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돌봄 사업

제6조(돌봄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돌봄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돌봄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종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전년도 종합계획 추진 결과의 반영
2. 돌봄에 관한 정책방향과 추진목표
3. 돌봄의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4. 돌봄 시설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
5. 돌봄에 필요한 자원조달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6. 돌봄에 관한 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
7. 그 밖에 시장이 돌봄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돌봄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돌봄 지원 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돌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돌봄 시설 확충 및 지원사업
2. 돌봄 서비스 및 프로그램 지원 사업
3. 돌봄 정보의 교류 및 협력을 위한 민·관·학 협력과 지역 연계 사업
4. 돌봄 인력 양성 및 지원 사업
5. 돌봄 수요 및 공급 현황 조사 사업
6. 돌봄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초등돌봄 지역협의체의 설치) ① 시장은 지역 돌봄 시설 간 돌봄 서비스 연계·협력을 강화하고 아동 돌봄을 증진하기 위하여 순천시 초등돌봄 지역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심의·자문
2. 지역 돌봄 운영계획 심의·자문
3. 돌봄 시설 간의 연계 및 조정
4. 돌봄 서비스 홍보 및 돌봄관계자 공동 교육 방안 마련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

제9조(협의체 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순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 순천시 돌봄 업무 관련 국장
3. 순천시 교육지원청 돌봄 업무 관련 부서장
4. 관련 단체·기관·학계 전문가, 학부모 또는 종사자 등

제10조(위원의 임기)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협의체 운영) ① 회의는 정례회로 연 2회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체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협의체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⑤ 협의체는 민·관·학 협력 돌봄 사업 추진의 효율적 운영 및 돌봄 시설 간 유기적 협업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협의체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사업위탁) 시장은 아동 돌봄 사업의 전문성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 비영리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4조(보험) ① 시장은 돌봄 시설 및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이용 아동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험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약관에 따른다.

제15조(지도·점검) ①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돌봄 시설에 대하여 돌봄 시설의 운영,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 관리, 재정관리 상태 등을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점검할 수 있다.

② 돌봄 시설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16조(홍보) 시장은 돌봄 정책의 공유 및 우수사례 확산을 위한 정책 홍보 자료를 제작·보급하고 홍보 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순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영란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제3489호
----------	--------

발의연월일 : 2021. 7. 1.

이영란 · 강형구 · 김미연

발 의 자 : 이명옥 · 오행숙 · 정홍준

허유인 의원

1. 개정이유

- 사회·경제·문화적으로 다양한 사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고립되어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청년들에 관한 문제가 오랜 시간 동안 사회적으로 대두되어 왔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 지원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음
- 이에 순천시 청년들의 육체적·정신적 건강증진을 도모함과 동시에, 사회적으로 고립된 청년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그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것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에 청년의 건강증진 규정(제5조제2항제2호아목)
- 나. 청년의 건강증진을 위한 노력 의무 규정(제19조)
 - 외부와 고립되어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곤란한 청년 우선 고려

3. 개정조례안 : 별첨

4. 관련법령 : 「청년기본법」, 「사회보장기본법」

5. 예산상황 : 예산의 범위에서 수립·시행하는 지원계획에 따른 재정 수반

순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2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청년의 건강증진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를 각각 제20조부터 제24조까지로 하고,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청년의 건강증진) ① 시장은 청년의 육체적·정신적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특히 사회·경제·문화적으로 다양한 사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고립되어 정상적인 사회 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청년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법인·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위탁을 한 경우에는 해당 법인·기관·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제5조(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2. -----
가. ~ 사. (생 략)	가. ~ 사. (현행과 같음)
<신 설>	아. 청년의 건강증진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9조(청년의 건강증진) ① 시장은 청년의 육체적·정신적 건강을 증 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특 히 사회·경제·문화적으로 다양 한 사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고립되어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현저히 곤란 한 청년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 한 경우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법인·기관·단체 등에 위탁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위탁을 한 경우에는 해당 법인·기관·단 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 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

<u>제19조</u> ~ <u>제23조</u> (생략)	지 아니한 사항은 「<u>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u>」를 따른다. <u>제20조</u> ~ <u>제24조</u> (현행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와 같음)
---------------------------------------	---

청년기본법

제21조(청년 복지증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육체적·정신적 건강 증진과 삶의 질 개선 등 복지 증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사회보장기본법

제2조(기본 이념) 사회보장은 모든 국민이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행복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자립을 지원하며, 사회참여·자아실현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 사회통합과 행복한 복지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한다.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증진하는 책임을 가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관한 책임과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발전수준에 부응하고 사회환경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고 매년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사회보장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격년으로 실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6조(국가 등과 가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이 건전하게 유지되고 그 기능이 향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시행할 때에 가정과 지역공동체의 자발적인 복지활동을 촉진하여야 한다.

제27조(민간의 참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대한 민간부문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시행하고 그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대한 민간부문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자원봉사, 기부 등 나눔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 사업
2. 사회보장정책의 시행에 있어 민간 부문과의 상호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사업
3. 그 밖에 사회보장에 관련된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는 데에 필요한 사업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사회보장에 참여하는 데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순천시 청년 기본 조례

[시행 2020. 7. 31.] [전라남도순천시조례 제2158호, 2020. 7. 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에서 거주·생활하고 있는 청년에게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를 원칙으로 하되,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 “청년정책”이란 경제·사회·교육·복지·문화·예술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확대, 권익증진,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단체”란 경제·사회·교육·복지·문화·예술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확대, 권익증진, 발전을 목적으로 삼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청년활동”이란 경제·사회·교육·복지·문화·예술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 및 청년단체의 참여확대, 권익증진, 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5. “청년시설”이란 청년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정책을 수립·추진하고,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적극 준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정책과 관련 있는 경제·사회·교육·복지·문화적 환경을 마련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청년정책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① 시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되, 매년 연동화 계획을 마련하여 이를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가. 경제·사회·교육·복지·문화·예술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확대
나. 청년의 능력개발

다. 청년의 고용확대 및 일자리 질 향상

라. 청년의 생활안정

마. 청년문화·예술의 활성화

바. 청년의 권리보호

사. 청년시설의 설치·운영

3.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방안 및 지원체계

4. 청년정책위원회, 청년정책협의체 등 민·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

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 시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한다.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시장은 제5조의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해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청년정책 연구 등) ① 시장은 청년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청년정책 연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청년정책위원회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순천시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변경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장과 위촉직 위원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하고, 부위원장은 청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청년정책과 관련된 부서의 장 중에서 4명 이내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청년 7명 이상을 포함한다. 다만,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순천시의회 의원

2. 청년정책협의체 위원

3. 청년단체 등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

4.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또는 관계기관의 장

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할 때

3.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때

4.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10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경우 당해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제1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③ 위원회의 각종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청년정책협의체) ① 시장은 청년 관련 각종 의견수렴과 모니터링 등 청년정책에 대한 논의를 위하여 청년으로 구성된 청년정책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체는 제5조 기본계획 수립과정에 참여하여 청년정책과 관련된 의제를 발굴하고 제안함은 물론 청년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정책거버넌스의 파트너로서 역할을 이행한다.

제13조(청년의 참여확대 등) ① 시장은 청년정책 수립과 시행에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고 청년의 학습과 경험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결정 과정에서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고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청년의 능력개발 등) ① 시장은 취업을 비롯한 사회적·경제적·문화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역량개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창의적·전문적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청년의 고용 확대 등) ① 시장은 관계 법령에 따라 청년고용을 확대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고용의 확대를 위해 취업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청년창업을 육성하기 위해 창업환경 개선과 안정적인 창업기반 조성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을 수행하거나 청년고용 확대에 직접 기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시장은 필요한 경우 일자리 관련 단체 또는 기관 등과 청년고용 촉진 및 지원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청년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차별을 개선하고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6조(청년의 생활안정) ① 시장은 청년의 생활안정을 위한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② 생활안정을 위한 방안에는 보건 및 안전, 결혼 및 보육, 주거 등에 대한 지원이 포함된다.

제17조(청년문화·예술의 활성화 등) ① 시장은 청년문화·예술 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사회·문화적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청년이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창의적 청년문화 형성을 위해 청년 문화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문화예술 향유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청년의 권리보호 등) ① 시장은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사회적 인식 개선 및

환경조성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홍보를 실시하고 청년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청년시설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청년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원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과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년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원할 때에는 청년의 참여와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청년센터 설치·운영 등) ① 시장은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순천시 청년센터(이하 “청년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청년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청년공간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청년의 능력개발과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실행 및 지원
3. 청년의 취업·진로·창업지원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4. 청년의 자립기반 확대 및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5. 국내외 청년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활동
6. 그 밖에 청년정책 관련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시장은 청년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센터장 및 사무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채용, 보수, 복무 등 인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시장은 청년센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라 청년센터를 위탁 운영할 경우 그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실비보상) 위원회 및 협의체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청년단체 등에 대한 재정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을 위하여 활동하는 청년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청년 능력개발 및 교육지원
2. 청년 자립 역량 강화
3. 축제 등 문화 행사 및 청년거리 조성

4. 청년 관련 국내외 교류 및 네트워크 지원

5. 청년 관련 연구·조사 활동

6. 청년정책협의체 운영 및 활동 지원 사업

7. 청년의 권리보호와 청년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

8. 그 밖에 청년 정책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광주광역시 남구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사회적 고립청년”이란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 중 사회적·심리적 요인으로 인해 가족 등과 제한적인 관계만 맺고 지내며 1년 이상 장기 미취업 상태인 사람으로서 사회진출 과정에 어려움을 느끼고 사회적 관계를 스스로 단절한 사람을 말한다.

제11조(청년정책 사업의 추진) 구청장은 청년의 참여확대와 권익증진, 그 밖에 청년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특히, 사회적 고립청년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제18조(청년의 건강증진) ① 시장은 청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회·경제적 이유 등으로 건강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청년의 건강 보호·증진을 위한 지원 방안에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1. 청년의 건강 보호·증진 지원을 위한 지원 대상 선정 기준,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수립·시행
2. 청년의 건강 보호·증진 지원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

③ 시장은 청년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청년 기본 조례

제21조의2(청년의 건강권) ① 구청장은 청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회·경제적 이유 등으로 건강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년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순천시 창업보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3491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21. 7. 1.

1. 개정이유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 2020년 8월에 최초 시행됨에 따라 지자체 기금의 직접 투자 근거 마련과 위원회 운영 등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액셀러레이터를 창업기획자로 용어 변경(안 제2조제5항)
- 관계 법령에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추가(안 제2조제6항)
- 벤처투자법 시행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투자 근거 마련(안 제4조)
 - 제1항제9호 중 “투자 유치 및 해외 진출”을 “투자·투자유치·해외 진출”로 개정
- 창업지원위원회 역할 명확화(안 제6조)
 - 제1항 중 “심의·의결 및 자문”을 “자문”으로 개정
 - 제2항 중 “심의·의결”을 “자문”으로 개정
 - 제2항제5호 삭제

3. 개 정 안 : 별첨

4. 관련법령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해당 없음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21. 4. 30. ~ 5. 20.)결과 : 의견 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21. 4. 27.(여성가족과-9274호)

- 예산부서 심의필 : 2021. 4. 29.(기획예산실-6371호)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21. 4. 29.(기획예산실-6371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21. 4. 30.(순천시 공고 제2021-1085호)

순천시 창업보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창업보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액셀러레이터”를 “창업기획자”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및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조제1항제9호 중 “투자 유치 및 해외 진출”을 “투자·투자유치·해외 진출”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심의·의결 및 자문하기”를 “자문하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심의·의결한다”를 “자문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4. (생 략) 5. “기업 지원시설”이란 회계·세무·법률 전문가 또는 기관, 엔젤투자자, 벤처캐피탈, <u>액셀러레이터</u> , 금융기관 등 “창업 지원시설” 입주기업의 지원을 위하여 설치하는 제반시설을 말한다. 6. 이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 <u>중소기업창업 지원법</u>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정의) ----- -----. 1. ~ 4. (현행과 같음) 5. ----- ----- ----- <u>창업기획자</u> ----- ----- -----. 6. ----- ----- 「 <u>중소기업창업 지원법</u> 」 및 「 <u>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u> 」-----.
제4조(창업 지원사업) ① 시장은 창업자 등의 성공·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 1. ~ 8. (생 략) 9. 창업을 위한 <u>투자 유치 및 해외 진출 지원</u> 10. (생 략) ② (생 략)	제4조(창업 지원사업) ① ----- ----- ----- -----. 1. ~ 8. (현행과 같음) 9. ----- <u>투자·투자유치·해외진출</u> -- 10.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창업지원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u>심의·의결 및 자문하기</u> 위하여 순천시 창업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할 수 있다.	제6조(창업지원위원회 설치) ① --- ----- <u>자문하기</u> ----- -----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 4. (생략)

5. 지원시설 입주(신청)자의 입주
승인 및 취소

6. (생략)

② -----
자문한다.

1. ~ 4. (현행과 같음)

<삭제>

6. (현행과 같음)

순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3492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21. 7. 1.

1. 개정이유

- 「국민체육진흥법」 개정('20. 12. 8.)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 및 체육단체 운영 지원근거 마련 등 지역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여 시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체육진흥협의회 구성 정비(안 제7조)
 - 부의장은 순천시체육회장, 당연직 위원은 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순천시장애인체육회 상임부회장으로 수정
- 노인체육의 진흥을 위한 보조금 지원 근거 신설(안 제20조)
- 체육회 등에 대한 운영비 지원 근거 신설(안 제22조~제24조)
 - 상근직원 인력운영비, 사무시설 임차료 등 기타 필요 운영경비
 - 보조금 용도외 사용금지 등, 지방보조금 전용카드의 사용
- 체육단체 지도·감독 규정 강화(안 제30조)
 - 지도감독결과 부당행위에 대해서 관련자 징계요구 및 고발조치 등
- 기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자구 수정 등

3. 개 정 안 : 별첨

4. 관련법령 : 국민체육진흥법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해당 없음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21. 5. 21. ~ 2021. 6. 10.) 결과 : 의견 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 분석평가 : 2021. 5. 20.(여성가족과-10906호)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21. 5. 20.(기획예산실-7305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21. 5. 21.(순천시 공고 제2021-1225호)

순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를 “시민의 행복과 자긍심을 높여 건강한 공동체 실현에 이바지” 로 한다.

제2조제10호 중 “대한체육회나 대한장애인체육회” 를 “순천시체육회 또는 순천시장애인체육회(이하 “체육회 등” 으로 한다)로 한다.

제6조제3호 중 “기타” 를 “그 밖에” 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교육장” 을 “순천시체육회장”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 을 “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순천시장애인체육회 상임부회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 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제2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3. 체육 또는 체육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

제8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의장과 부의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9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23조 앞에 “제5장 사업 및 시설운영의 위탁” 을 삭제한다.

제20조, 제22조 및 제27조를 각각 제21조, 제26조 및 제31조로 하고,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노인체육의 진흥) 시장은 노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장의 제목 “체육시설의 확충”을 “보조금 등 지원”으로 한다.

제21조, 제23조 및 제28조를 각각 제25조, 제27조 및 제32조로 하고,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체육회 등 운영비 지원) ① 시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제3항에 체육회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호의 인건비·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

1. 상근직원 인력운영비
2. 관서운영 기본경비
3. 사무시설 임차료
4. 기타 지원이 필요한 운영 경비

② 제1항의 상근직원 인력운영비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하며 운영비의 구체적 기준과 범위, 지급금액, 부당집행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③ 체육회 등은 제1항 각 호의 인건비·운영비에 변동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각각 제28조부터 제31조까지로 하고,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용도의 사용금지 등) ① 체육회 등은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체육회 등은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이나 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시장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다만 교부조건 등에서 정한 경미한 내용의 변경이나 경비 배분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체육회 등은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9조(중전의 제25조)제1항 중 “시장은”을 “시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제44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시장은 체육단체에 대한 지도감독결과 확인된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관

런자 징계요구나 고발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4조(지방보조금 전용카드의 사용) ① 체육진흥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받는 체육회 등이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보조금 전용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인건비성 경비 및 용역비를 집행하여야 하는 경우
2. 지방보조금 전용카드를 이용한 지출이 불가능한 경우

②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지도하고 감독하여야 한다.

제27조(종전의 제23조) 중 “제15조” 를 “제16조” 로 한다.

제25조 앞에 “제5장 체육시설의 확충” 을 삽입한다.

제27조 앞에 “제6장 사업 및 시설운영의 위탁” 을 삽입한다.

제24조 앞에 “제6장 보칙” 을 삭제한다.

제28조 앞에 “제7장 보칙” 을 삽입한다.

제32조(종전의 제28조) 중 “관하여 필요” 를 “필요”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의 체육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u>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u>	제1조(목적) ----- ----- ----- ---- <u>시민의 행복과 자긍심을 높여 건강한 공동체 실현에 이바지</u>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9. (생략) 10. “경기단체”란 특정 경기 종목에 관한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u>대한체육회나 대한장애인체육회에</u> 가맹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11. (생략)	제2조(정의) ----- -----. 1. ~ 9. (현행과 같음) 10. ----- ----- ----- <u>순천시체육회 또는 순천시장애인체육회(이하 “체육회 등”으로 한다)</u> ----- -----.
제6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2. (생략) 3. <u>기타</u> 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기능) ----- ----- ----. 1.·2. (현행과 같음) 3. <u>그 밖에</u> ----- -----
제7조(구성) ① (생략) ②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u>교육장</u> 이 된다. ③ <u>위원</u> 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7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 <u>순천시체육회장</u> -----. ③ <u>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순천시장애인체육회 상임부회장은 당연</u>

1. (생략)

2. 체육단체 및 체육관련 기관의
장 또는 관리자

<신설>

3. (생략)

4. 사회단체·직능단체 등 각 분
야를 대표하는 사람

제8조(임기) ① ~ ② (생략)

<신설>

제19조(장애인체육의 진흥) ① (생략)

② 장애인체육 동호인조직은 비영
리 민간조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상시 구성 회원의 수는 장애인
15명 이상

2. 최근 1년 이상 정기적인 체육활
동 실적이 있는 모임

③ (생략)

<신설>

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

1. (현행과 같음)

<삭제>

3. 체육 또는 체육행정에 관한 학
식과 경험이 있고 지역사회 체육
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
할 수 있는 사람

2. (현행 제3호와 같음)

<삭제>

제8조(임기)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의장과 부의장 및 당연직 위원
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
간으로 한다.

제19조(장애인체육의 진흥) ① (현
행과 같음)

<삭제>

③ (현행과 같음)

제20조(노인체육의 진흥) 시장은 노
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

제20조 (생략)

제4장 체육시설의 확충

<신설>

<신설>

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 (현행 제20조와 같음)

제4장 보조금 등 지원

제22조(체육회 등 운영비 지원) ①

시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체육회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호의 인건비·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

1. 상근직원 인력운영비

2. 관서운영 기본경비

3. 사무시설 임차료

4. 기타 지원이 필요한 운영 경비

② 제1항의 상근직원 인력운영비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하며 운영비의 구체적 기준과 범위, 지급금액, 부당집행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③ 체육회 등은 제1항 각 호의 인건비·운영비에 변동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3조(용도의 사용금지 등) ① 체

육회 등은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신 설>

<신 설>

제21조 · 제22조 (생 략)

아니 된다.

② 체육회 등은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이나 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시장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다만 교부조건 등에서 정한 경미한 내용의 변경이나 경비 배분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체육회 등은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4조(지방보조금 전용카드의 사

용) ① 체육진흥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받는 체육회 등이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보조금 전용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인건비성 경비 및 용역비를 집행하여야 하는 경우

2. 지방보조금 전용카드를 이용한 지출이 불가능한 경우

②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지도하고 감독하여야 한다.

제5장 체육시설의 확충

제25조 · 제26조 (현행 제21조 및 제

제5장 사업 및 시설운영의 위탁

<신 설>

제23조(사업 및 시설운영의 위탁)

시장은 제15조의 체육진흥 계획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시설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체육단체 또는 비영리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신 설>

제24조 (생 략)

제25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는 체육단체에 대하여 운영에 관한 정기적인 지도·감독 및 감사를 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신 설>

제26조·제27조 (생 략)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22조와 같음)

<삭 제>

제6장 사업 및 시설운영의 위탁

제27조 (사업 및 시설운영의 위탁)

----- 제16조-----

<삭 제>

제7장 보칙

제28조 (현행 제24조와 같음)

제29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제44조에 따라 -

-----.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시장은 체육단체에 대한 지도 감독결과 확인된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관련자 징계요구나 고발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30조·제31조 (현행 제26조 및 제27조와 같음)

제32조(시행규칙) -----
필요-----
---.

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3494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21. 7. 1.

1. 개정이유

-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 훈령)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분리배출 품목(투명 PET병) 추가
- 재활용품 분리배출 방법 구체화

3. 개 정 안 : 별첨

4. 관련법령 :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해당 없음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21. 5. 31. ~ 6. 22.)결과 - 의견 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21. 5. 14.(여성가족과-10593호)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21. 5. 7.(기획예산실-15096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21. 5. 31.(순천시 생태환경센터 청소자원과 공고 제2021-12호)

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재활용가능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 요령

종 류	품 목	배 출 요 령
종이류	○ 신문지	•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아서 묶음 • 비닐 코팅된 광고지, 비닐류, 그 밖의 오물이 섞이지 않아야 함
	○ 책자, 노트, 종이쇼핑백, 달력, 포장지	• 비닐코팅표지, 공책(달력)의 스프링 등은 제거 • 펼치거나 압착하여 한데 묶어서 배출 ※ 비닐포장지, 금속이 박힌 복합소재 종이, 배전표, 영수증, 사진용지, 사용한 화장지, 오염된 종이 호일, 방수 가공 포스터 등은 제외
	○ 종이컵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 후 압착하여 투명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어서 배출
	○ 종이팩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 후 펼치거나 압착하여 투명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어서 배출
	○ 상자류(포장상자, 그 밖에 골판지 상자 등)	• 비닐코팅부분 제거 •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 철판 등을 제거한 후 압착하여 운반이 용이하도록 묶음
캔류	○ 철캔, 알루미늄캔 (음·식용류)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 후 가능하면 압착하여 배출
	○ 그 밖의 캔 (부탄가스, 살충제 용기)	• 겉 또는 속에 플라스틱 뚜껑이 있는 것은 플라스틱 제거 • 구멍을 뚫어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고철류	○ 고철(공기구, 철사, 못, 철판 등 쇠붙이) ○ 비철금속(양은, 스테인류, 전선, 알루미늄 새시류)	• 붙어있는 플라스틱, 고무류 등은 제거 •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투명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어서 배출
유리병류	○ 음료수병, 그 밖의 병	• 내용물을 비우고 부착상표를 제거 후 배출 • 빈용기보증금 대상 유리병은 소매점 등에서 환불

종 류	품 목	배 출 요 령
합성수지류	○ 플라스틱류 : PET, PVC, PE, PP, PS, PSP 재질 등의 용기·포장재, 1회용 봉투	•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다른 재질로 된 뚜껑 (또는 은박지, 랩 등)이나 부착상표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배출 • 비닐류는 흘날리지 않도록 배출 • 음식물 등 이물질이 많이 묻어있는 1회용 봉투는 제외 ※ 용기 또는 봉투, 봉투에 표기된 플라스틱 재활용 마크 확인 배출
	○ 투명 PET병 - 무색 투명한 먹는 샘물, 음료 PET병	•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부착상표(라벨)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뚜껑을 닫아 배출 • 유색PET병 및 플라스틱류와 구분하여 별도 배출
	○ 스티로폼 완충재 - 전자제품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 포장재 - 농·수·축산물 포장용 발포스티렌 상자	• 전자제품 완충용 스티로폼은 되도록 제품 구입처로 반납 • 농·수·축산물 포장용 스티로폼 상자는 내용물은 비우고, 이물질이 묻어 있는 것은 물로 씻어서 말린 후 배출 • 이물질 및 부착상표, 라벨, 비닐코팅 부분은 제거 후 묶어서 배출 ※ 건축용 단열재, 공작용 우드락은 제외
의류	○ 면제품류 ○ 합성섬유	• 물에 젖은 의류는 말리고, 이물질이 묻은 의류는 세탁 후 의류수거함에 배출 ※ 카펫, 가죽제품, 일회용 기저귀 등 제외
전지류	○ 수은전지, 산화은전지 - 니켈카드뮴전지, 리튬 1차전지, 망간전지, 알칼리망간, 니켈수소전지	• 전지를 제품에서 분리하여 배출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u>공동주택 등에 비치된 수거함에 배출</u>
형광등	○ 형광등 - 직관형(FL), 환형(FCL), 안정기, 내장형(CFL), 콤팩트형(FPL), 기타 수은을 함유한 조명제품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공동주택 등에 비치된 수거함에 배출 ※ 형광등 외 조명커버 및 각종 부속물은 제거 ※ 전구는 일반생활폐기물로 배출
폐휴대폰	○ 휴대폰, 휴대폰 배터리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수거함에 배출

종 류	품 목	배 출 요 령
<u>전자제품</u>	○ <u>대형 가전제품</u> - <u>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 오븐, 공기청정기, 식기세척기, 건조기</u> <u>복사기, 정수기, 전축</u> <u>데스크탑 PC 등</u>	• <u>대형폐기물 스티커를 부착하여 배출하거나, 폐가전제품 무상방문수거 서비스를 통해 배출</u>
	○ <u>소형 가전제품</u> - <u>PC본체, 모니터, 노트북</u> <u>오디오, 프린터, 전기비데,</u> <u>전기히터, 연수기, 가습기,</u> <u>다리미, 선풍기, 믹서기,</u> <u>청소기, 휴대폰 등</u>	• <u>소형 가전제품 5개 이상 모아서 폐가전제품 무상방문수거 서비스를 통해 배출</u> • <u>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공동주택 등에 비치된 수거함에 배출</u>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별표 2] 재활용기능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 요령

종 류	품 목	배 출 요 령
종이류	○ 신문지	•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아서 묶음 • 비닐코팅된 광고지, 비닐류, 그 밖의 오물이 섞이지 않아야 함.
	○ 책자, 노트, 종이쇼핑백, 달력, 포장지	• 비닐코팅표지, 공책(달력)의 스프링 등은 제거함. • 비닐포장지는 제외 • 펼치거나 압착하여 한데 묶어서 배출
	○ 종이컵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행군 후 압착하여 투명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어서 배출
	○ 종이팩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행군 후 펼치거나 압착하여 투명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어서 배출
	○ 상자류(포장상자, 그 밖에 골판지 상자 등)	• 비닐코팅부분 제거 •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 철판 등을 제거한 후 압착하여 운반이 용이하도록 묶음.
유리병류	○ 음료수병, 그 밖의 병	• 병뚜껑을 제거한 후 내용물을 비우고 배출 • 빈용기보증금 대상 유리병은 소매점 등에서 환불
합성수지류	○ 플라스틱류 : PET, PVC, PE, PP, PS, PSP 재질 등의 용기 · 포장재, 1회용 봉투	•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다른 재질로 된 뚜껑(또는 은박지, 랩 등)이나 부착상표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배출 • 비닐류는 혼날리지 않도록 배출 • 음식물 등 이물질이 많이 묻어있는 1회용 봉투는 제외 ※ 용기 또는 봉투, 봉투에 표기된 플라스틱 재활용 마크 확인 배출
	<신 설>	
	○ 스티로폼 완충재 - 전자제품 완충제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 포장재 - 농 · 수 · 축산물 포장용 발포스티렌 상자	• 전자제품 완충용 스티로폼은 되도록 제품구입처로 반납 • 농 · 수 · 축산물 포장용 스티로폼 상자는 내용물은 비우고, 이물질이 묻어 있는 것은 물로 씻어서 말린 후 배출 • 이물질 및 부착상표, 라벨, 비닐코팅 부분은 제거 후 묶어서 배출. <신 설>
의류	○ 면제품류 ○ 합성섬유류	• 물에 젖은 의류는 말리고, 이물질이 묻은 의류는 세탁 후 묶어서 배출 ※ 카펫, 가죽제품, 일회용 기저귀 등 제외
전자류	○ 수은전지, 산화은전지 니켈카드뮴전지, 리튬 1차전지, 망간전지, 알칼리망간, 나일수소전지	• 전지를 제품에서 분리하여 배출 • 음 ·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나 공동주택 등에 비치된 수거함에 배출
형광등	○ 형광등 : 직관형(FL), 환형(FCL), 안정기, 내장형(CFL), 콤팩트형(FPL), 기타 수은을 함유한 조명제품	• 음 ·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나 공동주택 등에 비치된 수거함에 배출
소형가전	○ 카메라, MP3, PMP, 게임기, 전자사전, 믹서기, 네비게이션, 스텐드, 헤어 드라이어 등으로 대형폐기물에 해당되는 제품 제외	• 음 ·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나 공동주택 등에 비치된 수거함에 배출
폐휴대폰	○ 휴대폰, 휴대폰배터리, 휴대폰충전기	• 음 ·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수거함에 배출
<신 설>		

개정안

[별표 2] 재활용기능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 요령

종 류	품 목	배 출 요 령
종이류	○ 신문지	•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아서 묶음 • 비닐코팅된 광고지, 비닐류, 그 밖의 오물이 섞이지 않아야 함.
	○ 책자, 노트, 종이쇼핑백, 달력, 포장지	• 비닐코팅표지, 공책(달력)의 스프링 등은 제거 • 펼치거나 압착하여 한데 묶어서 배출 ※ 비닐포장지, 금속이 박힌 복합소재 종이, 테배전표, 영수증, 사진용지, 사소한 화장지, 오염된 종이 호일, 방수 가공 포스터 등은 제외
	○ 종이컵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행군 후 압착하여 투명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어서 배출
	○ 종이팩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행군 후 펼치거나 압착하여 투명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어서 배출
	○ 상자류(포장상자, 그 밖에 골판지 상자 등)	• 비닐코팅부분 제거 •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 철판 등을 제거한 후 압착하여 운반이 용이하도록 묶음
유리병류	○ 음료수병, 그 밖의 병	• 내용물을 비우고 부착상표를 제거 후 배출 • 빈용기보증금 대상 유리병은 소매점 등에서 환불
합성수지류	○ 플라스틱류 : PET, PVC, PE, PP, PS, PSP 재질 등의 용기 · 포장재, 1회용 봉투	•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다른 재질로 된 뚜껑(또는 은박지, 랩 등)이나 부착상표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배출 • 비닐류는 혼날리지 않도록 배출 • 음식물 등 이물질이 많이 묻어있는 1회용 봉투는 제외 ※ 용기 또는 봉투, 봉투에 표기된 플라스틱 재활용 마크 확인 배출
	○ 투명 PET병 - 무색 투명한 먹는 샘물, 음료 PET병	•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부착상표(라벨)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뚜껑을 닫아 배출 • 무색 PET병 및 플라스틱류와 구분하여 별도 배출
	○ 스티로폼 완충재 - 전자제품 완충제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 포장재 - 농 · 수 · 축산물 포장용 발포스티렌 상자	• 전자제품 완충용 스티로폼은 되도록 제품구입처로 반납 • 농 · 수 · 축산물 포장용 스티로폼 상자는 내용물은 비우고, 이물질이 묻어 있는 것은 물로 씻어서 말린 후 배출 • 이물질 및 부착상표, 라벨, 비닐코팅 부분은 제거 후 묶어서 배출 ※ 건축용 단열재, 공작용 우드락은 제외
의류	○ 면제품류 ○ 합성섬유	• 물에 젖은 의류는 말리고, 이물질이 묻은 의류는 세탁 후 의류수거함에 배출 ※ 카펫, 가죽제품, 일회용 기저귀 등 제외
전자류	○ 수은전지, 산화은전지 니켈카드뮴전지, 리튬 1차전지, 망간전지, 알칼리망간, 나일수소전지	• 전지를 제품에서 분리하여 배출 • 음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공동주택 등에 비치된 수거함에 배출
형광등	○ 형광등 - 직관형(FL), 환형(FCL), 안정기, 내장형(CFL), 콤팩트형(FPL), 기타 수은을 함유한 조명제품	• 음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공동주택 등에 비치된 수거함에 배출 ※ 형광등의 조명커버 및 각종 부속물은 제거 ※ 전구는 일반생활폐기물로 배출
<삭 제>		
폐휴대폰	○ 휴대폰, 휴대폰 배터리	• 음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수거함에 배출
전자제품	○ 대형 가전제품 -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 오븐, 공기청정기, 식기세척기, 건조기, 복사기, 정수기, 전속 데스크탑 PC 등	•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부착하여 배출하거나, 폐가전제품 무상방문수거 서비스를 통해 배출
	○ 소형 가전제품 - PC본체, 모니터, 노트북, 오디오, 프린터, 전기비데, 전기히터, 연수기, 가습기, 다리미, 선풍기, 믹서기, 청소기, 휴대폰 등	• 소형 가전제품 5개 이상 모아서 폐가전제품 무상방문수거 서비스를 통해 배출 • 음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공동주택 등에 비치된 수거함에 배출

순천소형경전철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3495호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21. 7. 1.

1. 개정이유

- 소형경전철 장기운영형태 결정 및 경영활성화를 위한 운영위원회 도입
- 갈대열차 운행 및 요금제 일부 수정
- 기타 문구 정리

2. 주요내용

- 요금 수정 사항(제7조, 별표 1)
 - 관광지 통합입장권 소지자 및 입장료 면제자 선발권 할인(2,000원) 적용
 - ➡ 순천만국가정원 및 순천만습지 입구 선발권 시 할인 적용
 - 국가정원, 습지, 스카이큐브 관련 행사시 요금 조정 근거 신설
- 갈대열차 운행에 관한 사항(제11조)
 - 갈대열차 이용료 : 성인·청소년 3,000/소인·경로 2,000
 - 스카이큐브 탑승권 소지자 갈대열차 무료 이용
- 운영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제12조)
 - 목적 : 운영, 운영형태, 운영방향 등에 관한 자문 및 심의
 - 구성 :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15명 이내의 당연직, 위촉직 위원
 - (당연직 위원) 부시장, 국가정원 운영업무 담당 국·소장 및 과장, 교통업무 담당과장, 순천만습지운영업무 담당과장
 - (위촉직 위원) 순천시의회 의원, 철도·케도 시스템 운영에 관련 전문가, 시민 대표, 법률, 경영, 회계, 노무, 기술 분야 관련 전문가
 - 임기 : 2년, 1회 연임 가능
 - 심의 사항
 - 운영형태에 관한 사항
 - 운영활성화, 노선 등 발전 계획에 관한 사항
 - 그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3. 개 정 안 : 별첨

4. 관련법령 : 궤도운송법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비용추계서 첨부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21. 6. 4. ~ 6. 24.)결과 : 의견 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21. 6. 14.(여성가족과-12556호)

※위원 위촉 시 “성별 고려” 개선의견 ⇨ 반영 2021. 6. 21.(국가정원운영과 - 5437)

○ 예산부서 심의필 : 2021. 6. 4.(국가정원운영과-5025호)

○ 규제개혁 심의필 : 2021. 6. 4.(기획예산실-1136호)

○ 법제부서 심의필 : 2021. 6. 4.(기획예산실-1136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21. 6. 4.(순천시 공고 제2021-1331호)

순천소형경전철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소형경전철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갈대열차”란 문학관역과 순천만습지 구간을 운행하는 전기차, 유기기구 등 친환경 이동수단을 말한다.

제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순천만국가정원, 순천만습지, 소형경전철 등 관련 행사 시 이용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9조제3호 중 “인화물질 및 위험물”을 “인화물질”로 한다.

제11조부터 제17조까지를 각각 제13조부터 제19조까지로 하고, 제11조 및 제1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갈대열차) ① 갈대열차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2에 따른 이용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2의 면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 ② 소형경전철 탑승권 소지자는 제1항의 이용료를 지불한 것으로 본다.

- ③ 갈대열차의 운행시간, 정기휴무, 임시휴무, 이용료의 반환, 이용제한,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제3조, 제4조, 제5조, 제8조, 제9조, 제10조를 각각 준용한다.

제12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소형경전철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순천소형경전철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소형경전철 운영형태에 관한 사항
2. 소형경전철 운영활성화, 노선 등 발전 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국가정원 운영업무 담당 국·소장 및 과장, 교통 업무 담당 과장, 순천만습지 운영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1. 순천시의회 의원 2명

2. 철도·궤도 시스템 운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시민단체 및 지역주민 대표

4. 법률, 경영, 회계, 노무, 기술 분야 관련 자격증 소지자나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중전의 제17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별표 1 이용료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

이 용 료(조례 제7조 관련)

구 분		단일권 (소형경전철+갈대열차)		통합권 (국가정원+순천만 습지, 소형경전철+갈대열차)	비고
		왕복	편도		
일반권	성인	8,000	6,000	14,000	
	청소년, 군인	8,000	6,000	12,000	
	어린이	6,000	5,000	8,000	
	유아	6,000	5,000	5,000	
순천시민	성인	6,000	5,000	6,000	
	청소년, 군인	6,000	5,000	5,500	
	어린이	6,000	4,000	4,000	
단체 (20인 이상)	성인	7,000	5,500	11,000	
	청소년, 군인	5,000	3,500	8,000	
	어린이	4,000	3,000	6,000	
	유아	4,000	3,000	3,000	
	순천지역 중/고등학교	4,000	3,000	4,500	
	순천지역 초등학교	4,000	3,000	3,000	
	1년권 · 순천시민 1년 회원권 · 관광지 통합입장권 소지자/ 관람료 면제자	• 단일권 왕복 탑승요금에서 2,000원 할인된 금액 단, 국가정원 동·서문매표소, 순천만습지 입구 매표소 발권시에만 할인 적용			

별표 1 “※ 1.” 를 “※” 로 하고, 제2호를 삭제한다.

별표 1 <비고> 제1호 중 “36개월 이상” 을 “만 3세 이상” 으로, “7세 미만” 을 “6세 이하” 로 하고, 제3호 중 “19세 미만” 을 “18세 이하” 로 하며, 제7호 중 “이란” 을 “이란 「순천시 순천만국가정원 운영조례」 제4조 및 「순천시 순천만습지 운영조례」 제5조에 따른” 으로 하고, 제8호 중 “이란 순천시민” 을 “이란 「순천시 관광용시설물 입장료 및 이용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따른 순천시민” 으로 하며,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관광지 통합입장권” 이란 「순천시 관광용시설물 입장료 및 이용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 제4조의2 및 별표 4에 따른 드라마 촬영장, 순천만국가

정원, 순천만습지, 낙안읍성, 뿌리깊은나무박물관, 순천 자연휴양림을 관람할 수 있는 관람권을 말한다.

10. “관람료 면제자”란 「순천시 순천만국가정원 운영조례」 제5조 및 「순천시 순천만습지 운영조례」 제5조에 따라 순천만국가정원과 순천만습지의 관람료를 면제받아 무료로 입장 가능한 사람을 말한다.

별표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2]

갈 대 열 차 이 용 료(조례 제11조 관련)

구 분		이용료	비고
관 랑 차	성 인	3,000원	
	청소년		
	소인	2,000원	
	만 65세 이상, 장애인		

<면제 대상>

1. 국민 · 외교사절단 및 그를 수행하는 사람
2. 보호자와 함께 탑승하며 별도의 좌석이 필요하지 않은 만 3세 미만의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비고>

1. “소인”이란 만 3세 이상 만 12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이란 만 13세 이상 만 18세 이하인 사람과 중·고등학생을 말한다.
3. “성인”이란 만 19세 이상 만 6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이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5. (생략) <u><신설></u>	제2조(정의) ----- -----. 1. ~ 5. (현행과 같음) 6. <u>“갈대열차”란 문학관역과 순천만습지 구간을 운행하는 전기차, 유기기구 등 친환경 이동수단을 말한다.</u>
제7조(이용료) (생략) <u><신설></u>	제7조(이용료)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u>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순천만국가정원, 순천만습지, 소형경전철 등 관련 행사 시 이용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u>
제9조(이용제한) 시장은 시설의 보호 및 이용객의 안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소형경전철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2. (생략) 3. <u>인화물질 및 위험물, 흥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사람</u> 4. 5. (생략) <u><신설></u>	제9조(이용제한) ----- ----- ----- ----- -----. 1. 2. (현행과 같음) 3. <u>인화물질</u> ----- ----- 4. 5. (현행과 같음) 제11조(갈대열차) ① <u>갈대열차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2에 따른 이용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2의 면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u> ② <u>소형경전철 탑승권 소지자는 제</u>

<신 설>

1항의 이용료를 지불한 것으로 본다.

③ 갈대열차의 운행시간, 정기휴무, 임시휴무, 이용료의 반환, 이용제한,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제3조, 제4조, 제5조, 제8조, 제9조, 제10조를 각각 준용한다.

제12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소형경전철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순천소형경전철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소형경전철 운영형태에 관한 사항
2. 소형경전철 운영활성화, 노선 등 발전 계획에 관한 사항
3. 그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국가정원 운영업무 담당 국·소장 및 과장, 교통업무 담당 과장, 순천만습지 운영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1. 순천시의회 의원 2명
2. 철도·궤도 시스템 운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시민단체 및 지역주민 대표

제11조 ~ 제16조 (생략)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별표 1]

이용료(순천소형경전철 운영 조례 제7조 관련)

구분		소형경전철		통합요금 (국가정원 순천만습지 소형경전철)	비고
		왕복	편도		
일	성인	8,000	6,000	14,000	

4. 법률, 경영, 회계, 노무, 기술 분야 관련 자격증 소지자나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 ~ 제18조 (현행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와 같음)

제19조(시행규칙) ----- 필요-----.

[별표 1]

이용료(조례 제7조 관련)

구분		단일권 (소형경전철+갈대열차)		통합권 (국가정원+순천만습지, 소형경전철+갈대열차)	비고
		왕복	편도		
일	성인	8,000	6,000	14,000	

반 권	청소년, 군인	8,000	6,000	12,000	
	어린이	6,000	5,000	8,000	
	유아	6,000	5,000	5,000	
순 천 시 민	성인	6,000	5,000	6,000	
	청소년, 군인	6,000	5,000	5,500	
	어린이	6,000	4,000	4,000	
단 체 (20 인 이 상)	성인	7,000	5,500	11,000	
	청소년, 군인	5,000	3,500	8,000	
	어린이	4,000	3,000	6,000	
	유아	4,000	3,000	3,000	
	순천지역 중/고등 학교	4,000	3,000	4,500	
	순천지역 초등학교	4,000	3,000	3,000	
	1년권/ 순천시민 1년 회원권 <u>소지자</u>	• 왕복 탑승요금에서 2,000원 할인된 금액			

※ 1.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정한
관광주간 할인행사 등 기타
중복 할인 불가

2. 순천만국가정원 및 순천만습지
무료 입장객에 대해서는 통합할
인을 적용하지 않음

<비고>

1. “유아”란 36개월 이상 ~ 만 7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 2.(생 략)
3. “청소년”이란 만 13세 이상 만 1
9세 미만인 사람과 중·고등학생
을 말한다.

반 권	청소년, 군인	8,000	6,000	12,000	
	어린이	6,000	5,000	8,000	
	유아	6,000	5,000	5,000	
순 천 시 민	성인	6,000	5,000	6,000	
	청소년, 군인	6,000	5,000	5,500	
	어린이	6,000	4,000	4,000	
단 체 (20 인 이 상)	성인	7,000	5,500	11,000	
	청소년, 군인	5,000	3,500	8,000	
	어린이	4,000	3,000	6,000	
	유아	4,000	3,000	3,000	
	순천지역 중/고등 학교	4,000	3,000	4,500	
	순천지역 초등학교	4,000	3,000	3,000	
	1년권· 순천시민 1년 회원권· 관광지 통합입장권 소지자/ 관람료 면제자	• 단일권 왕복 탑승요금에서 2,000원 할인된 금액 단, 국가정원 동·서문매표 소 순천만습지 입구 매표소 에서만 할인 적용			

※ -----

<삭 제>

<비고>

1. ----- 만 3세 이상 ----- 6세
이하-----.
- 2.(현행과 같음)
3. ----- 1
8세 이하-----
-----.

4. ~ 6. (생략)

7. “1년권”이란 발행일로부터 1년간 순천만국가정원과 순천만습지를 관람할 수 있는 관람권을 말한다.

8. “순천시민 1년 회원권”이란 순천시민이 발행일로부터 1년간 순천만국가정원, 순천만습지, 낙안읍성, 드라마촬영장, 뿌리깊은나무박물관을 관람할 수 있는 관람권을 말한다.

<신설>

<신설>

<신설>

4. ~ 6. (현행과 같음)

7. -----이란 「순천시 순천만국가정원 운영조례」 제4조 및 「순천시 순천만습지 운영조례」 제5조에 따른 -----
-----.

8. -----이란 「순천시 관광용시설물 입장료 및 이용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따른 순천시민-----
-----.

9. “관광지 통합입장권”이란 「순천시 관광용시설물 입장료 및 이용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 제4조의2 및 별표 4에 따른 드라마촬영장, 순천만국가정원, 순천만습지, 낙안읍성, 뿌리깊은나무박물관, 순천 자연휴양림을 관람할 수 있는 관람권을 말한다.

10. “관람료 면제자”란 「순천시 순천만국가정원 운영조례」 제5조 및 「순천시 순천만습지 운영조례」 제5조에 따른 순천만국가정원과 순천만습지의 관람료를 면제받아 무료로 입장 가능한 사람을 말한다.

[별표 2]

갈대열차 이용료(조례 제11조 관련)

구 분		이용료	비고
관 람 차	성 인	3,000원	
	청소년		
	소인	2,000원	
	만 65세 이상, 장애인		

<면제 대상>

1. 국빈 · 외교사절단 및 그를 수행하는 사람
2. 보호자와 함께 탑승하며 별도의 좌석이 필요하지 않은 만 3세 미만의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비고>

1. “소인”이란 만 3세 이상 만 12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이란 만 13세 이상 만 18세 이하인 사람과 중고등학생을 말한다.
3. “성인”이란 만 19세 이상 만 6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순천소형경전철 운영 및 관리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관련조문)

○ 비용발생 요인 : 갈대열차 운영

○ 관련 조문 : 제11조(갈대열차)

- 제11조 : 갈대열차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2에 따른 이용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2. 비용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으로 함

- 21년 국가정원 관람차 및 대행사 인원 투입운영

○ 갈대열차 기간제 인건비, 운영비 및 이용수입 추계산정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천원)

연도별 구분	합 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총 비용(a-b)	554,340	30,868	130,868	130,868	130,868	130,868
세입(a)	1,350,000	270,000	270,000	270,000	270,000	270,000
세출(b)	795,660	239,132	139,132	139,132	139,132	139,132

3-1. 세입 비용추계

(단위: 천원)

연도별 구분	합 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총계	1,500,000	300,000	300,000	300,000	300,000	300,000
갈대열차 이용료 수입	1,500,000	300,000	300,000	300,000	300,000	300,000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연도별 구 분	합 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합 계	795,660	239,132	139,132	139,132	139,132	139,132
국 비						
도 비						
시 비	795,660	239,132	139,132	139,132	139,132	139,132

5. 비용추계의 상세내역(산출기초 등)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기 초	금 액
총계 (세입-세출)			30,868
세 출	소계		239,132
	운영비	- 갈대열차 기간제 인건비 -26,377*3명 = 79,132 - 운영 및 유지보수비 - 5,000 * 12 = 60,000	139,132
	차량구입비	갈대열차 구입 : 100,000	100,000
세 입	소계		270,000
	입장료	탐승인원 100,000명(1년) × 탐승료(2,700원)	270,000

6. 협의사항

○ 해당없음

7. 부대의견(제도개선 등)

○ 해당없음

8. 작성자(참여자)

순천만관리센터 국가정원운영 과장 김선순 (☎ 2722)
스카이뷰브안수팀장 김종길 (☎ 2830)